2017년도 문화재위원회

제12차 사적분과위원회 회의록

▣ 회의일시 : 2017. 11. 22 (수요일), 14:00 ~ 18:00

▣ 장　　소 : 정부대전청사 1동 207호

▣ 출석위원 : 이재범, 박광춘, 이경찬, 이승용, 이재운, 이영식, 이종욱, 임승빈, 최성락, 한필원, 허창수(이상 11명)

▣ 심의내용 및 의결사항 : 이하 자료와 같음

목 차

【심의사항】

1	사적 제320호 울산 경상좌도병영성 문화재보호구역 추가지정	(공 개)
2	사적 제396호 제주 항파두리 항몽 유적 내외 전주 신설	(공 개)
3	사적 제119호 고성 송학동 고분군 주변 공동주택 신축	(공 개)
4	사적 제302호 순천 낙안읍성 내 초가정자 설치	(공 개)
5	사적 제57호 남한산성 내 북장대 인근 여장 긴급 보수공사	(공 개)
6	사적 제369호 강화 석릉 등 주변 군부대 훈련장 경계울타리 설치	(공 개)
7	사적 제371호 강화 곤릉 주변 단독주택 신축 및 진입로 조성	(공 개)
8	사적 제371호 강화 곤릉 주변 단독주택 신축 및 진입로와 농지 조성	(공 개)
9	사적 제92호 익산 토성 주변 사격장 내 시설물 설치	(공 개)
10	사적 제135호 부여 궁남지 주변 임시 스케이트장 시설물 설치	(공 개)
11	사적 제396호 제주 항파두리 항몽 유적 주변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공 개)
12	사적 제416호 제주 삼양동 유적 주변 연립주택 신축	(공 개)
13	사적 제522호 제주 용담동 유적 주변 단독주택 신축	(공 개)
14	사적 제26호 경주 원성왕릉 주변 단독주택 신축	(공 개)
15	사적 제26호 경주 원성왕릉 주변 단독주택 신축(1부지)	(공 개)
16	사적 제26호 경주 원성왕릉 주변 단독주택 신축(2부지)	(공 개)
17	사적 제26호 경주 원성왕릉 주변 단독주택 신축(3부지)	(공 개)
18	사적 제26호 경주 원성왕릉 주변 단독주택 신축(4부지)	(공 개)
19	사적 제26호 경주 원성왕릉 주변 단독주택 신축(5부지)	(공 개)
20	사적 제26호 경주 원성왕릉 주변 단독주택 신축(6부지)	(공 개)
21	사적 제26호 경주 원성왕릉 주변 단독주택 신축(7부지)	(공 개)
22	사적 제26호 경주 원성왕릉 주변 단독주택 신축(8부지)	(공 개)
23	사적 제26호 경주 원성왕릉 주변 단독주택 신축(9부지)	(공 개)
24	사적 제26호 경주 원성왕릉 주변 단독주택 신축(10부지)	(공 개)
25	사적 제26호 경주 원성왕릉 주변 단독주택 신축(11부지)	(공 개)

26	사적 제26호 경주 원성왕릉 주변 단독주택 신축(12부지)	(공 개)
27	사적 제26호 경주 원성왕릉 주변 단독주택 신축(13부지)	(공 개)
28	사적 제26호 경주 원성왕릉 주변 단독주택 신축(14부지)	(공 개)
29	사적 제124호 덕수궁 주변 가설건축물 축조	(공 개)
30	사적 제193호 구리 동구릉 주변 근린생활시설 신축	(공 개)
31	사적 제206호 화성 융릉과 건릉 주변 근린생활시설 신축	(공 개)
32	사적 제140호 오산 독산성과 세마대지 주변 단독주택 신축	(공 개)
33	사적 제320호 울산 경상좌도병영성 주변 공장 신축	(공 개)
34	사적 제320호 울산 경상좌도병영성 주변 단독주택 신축	(공 개)
35	사적 제489호 춘천 신매리 유적 내 배수로 설치	(공 개)
36	사적 제534호 영월부 관아 내외 시굴조사 실시	(공 개)
37	사적 제386호 포항 장기읍성 주변 태양광발전소 건립	(공 개)
38	사적 제61호 고령 주산성 등 4개소 주변 건축행위 등 허용기준 조정	(공 개)
39	사적 제539호 부산 연산동 고분군 주변 건축행위 등 허용기준 마련	(공 개)
40	사적 제271호 경희궁지 주변 건축물 증축	(공 개)
【검토사항】		
41	사적 제439호 원주 강원감영 2단계 복원정비 계획 변경(담장 변경) 검토	(공 개)

【 심의사항 】

안건번호 사적 2017-12-001

1. 울산 경상좌도병영성 문화재보호구역 추가지정

가. 제안사항

울산광역시 중구 소재 사적 제320호 「울산 경상좌도병영성」의 국가지정 문화재(사적) 문화재보호구역 추가지정 신청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울산 경상좌도병영성의 보호구역을 추가지정 하고자 신청한 사항임.

- '17년 사적분과 제5차 위원회('17.5.24.) 검토를 검쳐 지정예고
  · 지정 예고일 : 2017.09.08.(문화재청 공고 제2017-293호)
  · 지정 예고기간 : 지정 예고일로부터 30일 이상
  · 지정 예고결과 : 의견없음
  * 지자체 국토부 의견수렴 '17.11.02.까지(의견없음)

다. 주요내용

(1) 신 청 인 : ○ ○ ○

(2) 대상문화재명 : 울산 경상좌도병영성(사적 제320호 / 1987.07.18 지정)

○ 소 재 지 : 울산시 중구 서동 일원

(3) 신청내용

○ 문화재구역 보호구역 추가지정 신청 면적

- 울산광역시 중구 동동 830-7, 51-9번지 총 2필지 621㎡

(4) 신청사유

○ 추가지정 대상부지인 2필지 621㎡는 울산 경상좌도병영성 북문 옹성과 동문지 옹성 해자 인접 지역임.

○ 특히, 2015. 11. 4. 문화재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11필지 3,932㎡와 인접하여 동 문화재보호구역과 기존 지정되어 있는 문화재 구역과 단절 구역 발생을 방지하여 효율적인 문화재 보존·관리를 위해 신청대상 2필지 621㎡를 보호구역으로 추가 지정 할 필요가 있음.

라. 추가 지정 조사보고서

□ 조사일 및 조사자

○ 조사일자 : 2017.03.15(수)

○ 조 사 자 : 문화재위원 ○○○, 문화재전문위원 ○○○·○○○

1. 문화재 종류

○사적

- 울산 경상좌도병영성(蔚山 慶尙左道兵營城)의 연접구역을 사적으로 추가 지정하고자 함.

2. 문화재 명칭

○ 문화재명 : “울산 경상좌도병영성(蔚山 慶尙左道兵營城)”으로 신청함.

■ 검토의견 : 문화재 지정명칭 부여 원칙에 따라 지역명+문화재명인“울산 경상좌도병영성(蔚山 慶尙左道兵營城)”이 적절한 것으로 사료됨.

3. 입지 현황 및 역사문화환경

○ 울산 경상좌도병영성은 경상좌도병마절제사영이 설치된 성이다. 울산 북서쪽의 치술령(765m)에서 뻗어 내린 구릉이 함월산(200m)을 지나 동천변에 닿은 산줄기의 말단부에 위치한 포곡식 석성이다.

○ 동쪽은 경주에서 흘러오는 동천과 접해 있고, 남쪽은 약 2.5㎞ 정도 떨어져 태화강이 서-동으로 흘러 바다로 유입된다. 태화강과 동천이 합류되는 지점의 북쪽편에 위치하는 구릉 일대에 해당한다. 경상좌도의 중심지인 경주를 거쳐 대구와 경북 내륙으로 통하는 교통로의 길목에 해당하는 중요한 지점에 위치하고 있다.

○ 병영성은 조선 태종 17년(1417)에 경주에 있던 경상좌도병마절제사영을 현재의 병영성으로 옮겨 석성으로 쌓았다.

처음 축조 당시에는 성벽과 여장등의 기본시설만 갖추었다가 세종때 옹성, 적대, 해자 등을 조성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4. 연혁 유래 및 특징

○ 울산 경상좌도 병영성은 경상좌도 병마절제사영이 설치된 성을 말함. 입지적으로 울산만에서 언양·경주 방면의 길목에 해당되며, 경북 내륙으로 통하는 교통에 길목에 위치함

○ 성벽은 자연 지형의 능선을 따라 축조하여 타원형을 이룸. 북쪽과 서쪽은 높고, 남쪽으로 가면서 낮아짐. 동쪽은 동천과 접해 급사면을 이룸

○ 병영성은 1417년(태종 17)에 경주 모화지역에 있던 것을 지금의 자리로 옮겨 석성을 쌓았음. 처음 축조 시에는 성벽과 여장 등 기본 시설만 갖추었다가 세종 때 옹성·해자 등을 조성한 것으로 알려져 있음. 초축 당시의 모습은 조선왕조실록에 나타나 있음.

"시기에 미치도록 개축할 곳은 다음과 같습니다. 울산군 내상성(內廂城)은 주위가 3,732척, 높이가 8척, 여장의 높이는 3척, 적대가 21개소 내에 아직 쌓지 않은 것이 3개소, 문이 4개소인데 옹성이 있으며, 여장이 908개, 성안의 우물이 11개소, 샘이 3개소, 해자는 혹은 파고 혹은 아직 파지 않았습니다." -조선왕조실록「문종실록」 1년(1451) 9월 -

○ 초창기 병영성은 임진왜란 당시 왜군이 병영성을 차지하게 되면서 내부 관아 시설 파괴, 성벽 훼손됨. 특히 정유재란 때 왜군이 병영성과 울산읍성의 성벽 돌을 이용해 울산왜성을 쌓으면서 대부분 훼손. 기단석과 면석 1~3단 정도만 남음. 임진왜란 이후 바로 복구되지는 못함

".....울산의 병영은 주장(主將)이 진수(鎭守)하는 곳인데도 성지가 무너지고 메워졌으며 문에는 문짝도 없습니다....." -조선왕조실록「선조실록」34년(1601) 4월 -

○ 그러나 영조 때(1757~1765)에 간행된 『여지도서』에 주요 건물의 배치 및 명칭이 기록되어 그 이전 시점에 어느 정도 복구된 것으로 추측

○ 1859년(철종 10)에 병사(兵使) 이원희가 남문 밖에 외성을 쌓았다는 기록이 있음

○ 북문지~동문지구간 성곽정비 완료(북문지~홍일아파트) : 2012년
- 성곽정비 : L=154.6m, 치성 정비 2개소
○ 북문지~동문지구간 성곽정비 완료(홍일아파트~월성개나리아파트) : 2014년
- 성곽정비 : L=146m, 치성 정비 1개소
○ 북문지~서문지 구간 성곽정비 중 : 2014~2015년
- 성곽정비 402m, 치성 정비 3개소
○ 병영성 월성개나리아파트~동문지구간 정비 199m : 2016년
- 성곽정비 199m

5. 지정 가치 및 근거기준

○ 추가지정 대상부지인 2필지 621㎡는 울산 경상좌도병영성 북문 옹성과 동문지 옹성 해자 인접 지역으로,

○ 그 중 동동 51-9번지는 북문으로 진입하는 주요 경로상에 위치하고 있고, 동동 830-7번지는 경상좌도병영성의 주요 식수원이 되었던 산전샘과 서로 통하던 주요 경로에 해당되어 보호 가치가 높고,

○ 특히, 2015. 11. 4. 문화재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11필지 3,932㎡와 인접하여 동 문화재보호구역과 기존 지정되어 있는 문화재 구역과 단절 구역 발생을 방지하여 효율적인 문화재 보존·관리를 위해 신청대상 2필지 621㎡를 보호구역으로 추가 지정할 필요가 있음.

6. 지정 대상 및 범위

신청면적 : 2필지 621㎡

보호구역 지정대상 및 범위 설정(안)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지정면적(㎡)	소유자		설정근거 및 사유
						성명	주소	
1	울산 중구 동동	830-7	도로	5,856	617	국유 (국토교통부)	세종 도움6로 11	동문지 옹성 해자
2	〃	51-9	전	4	4	임ㅇㅇ	울산 중구 염포로 8	북문 옹성 인접지
계		2필지		5,860	6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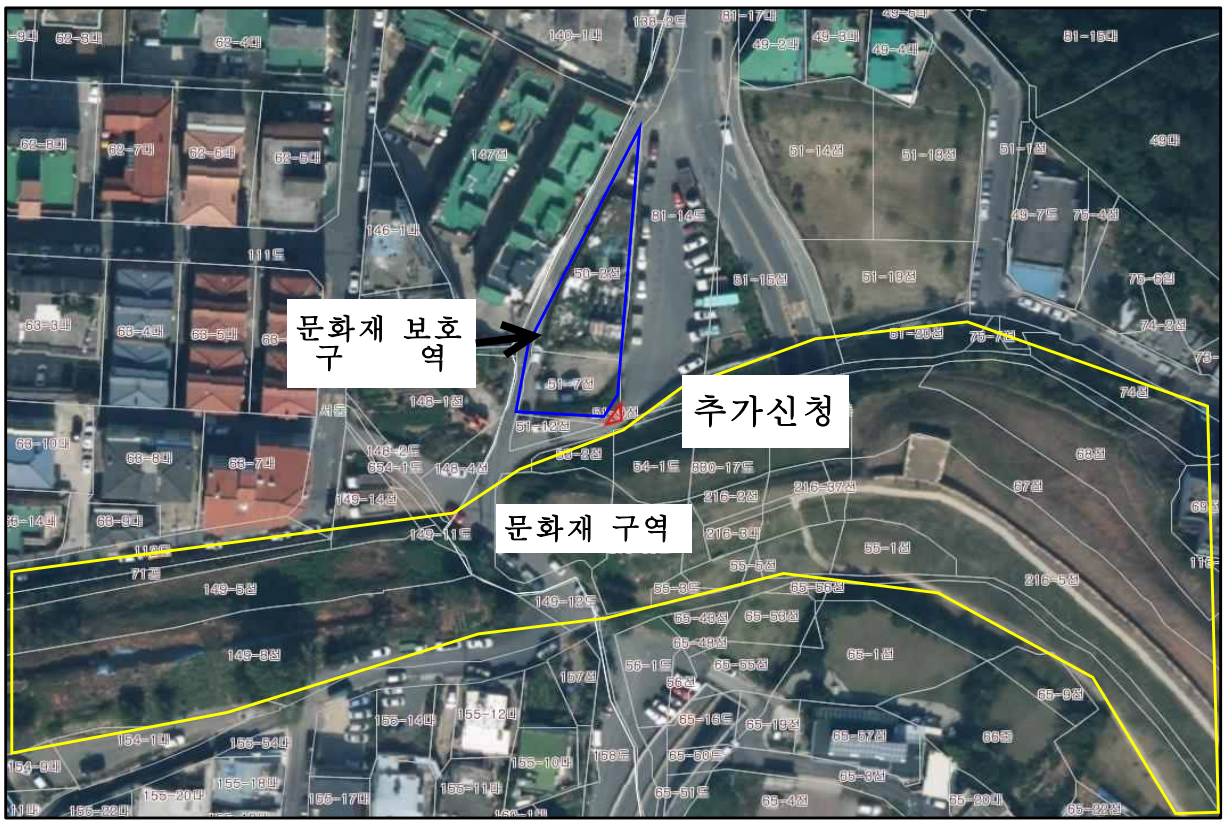
〈동동 830-7번지 지적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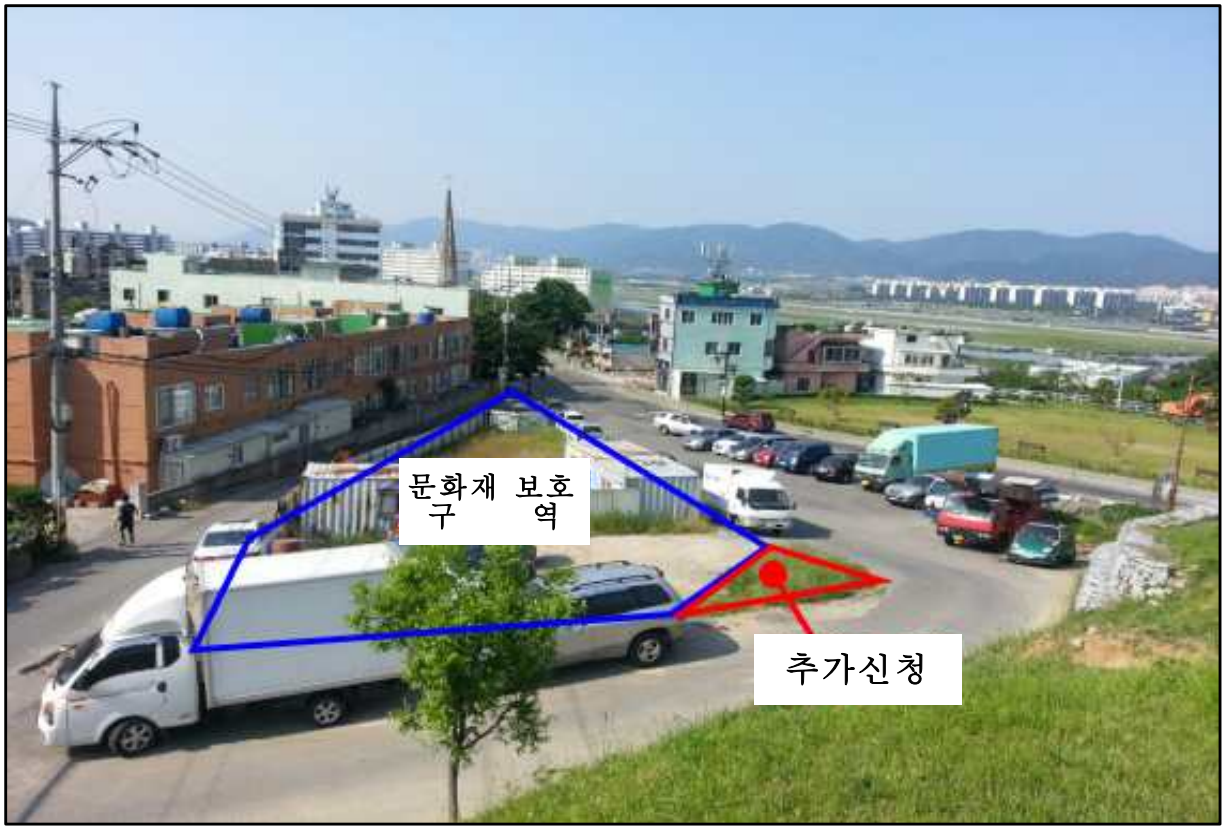
〈동동 830-7번지 현황 사진〉



〈동동 51-9번지 지적도〉



〈동동 51-9번지 현황 사진〉



7. 문화재 보존 영향 행위기준(안)

■검토의견 : 현상변경허용기준의 수립 중에 있음.

8. 보존 정비 및 활용 착안사항

□ **보수정비 현황**

○ 2010. 6월 : 울산 병영성 종합정비계획 수립

○ 성곽정비

- 2012년 : 북문지~동문지(홍일아파트까지)

⇒ L=154.6m, 치성2개소, 탐방로579㎡, 잔디식재 A=8,427㎡

- 2014년 : 북문지~동문지(홍일아파트~월성개나리아파트)

⇒ L=146m, 치성1개소, 탐방로 A=416㎡, 잔디식재 A=2,620㎡

- 2015년 : 북문지~서문지 L=402m

- 2016년 : 북문지~동문지(월성개나리~동문지) L=199m

○ 2014. 3 ~ 2014. 7 : 월성개나리아파트~동문지 구간 시발굴조사(A=9,690㎡)

○ 2014. 10 ~ 2015. 5 : 월성개나리아파트~동문지 구간 추가 발굴조사(A=1,600㎡)

○ 2017. 3월 : 북문복원 고증 기본계획 용역 착수

□ **향후계획 및 보존방안**

○ 동문지 성곽 및 서문지 옹성정비 : 2017년

○ 북문지 성곽정비 및 북문복원 : 2018년

○ 울산 경상좌도병영성 축성 600주년 기념 중장기 정비계획에 따라 2018년까지 연

차별로 서문지~북문지~동문지 성곽정비와 북문을 복원할 계획이다. 그동안의 발굴조사 결과에 따라 성곽 정비, 문루복원, 탐방로를 조성하고자 하며, 북문복원 고증기본 계획을 착수하여 내년까지 북문 복원을 완료함으로써, 병영성의 역사성을 회복하고 관광자원으로 활용하고자 한다.

○ 금번 북문 옹성 및 동문지 해자에 인접한 2필지에 대해 보호구역으로 추가 지정하여, 2015년 지정된 문화재 보호구역과 기존 문화재 구역간의 단절을 방지하여 효율적으로 문화재를 보호하고자 합니다.

9. 종합 의견

○ 추가지정 대상부지인 2필지 617㎡는 울산 경상좌도병영성 북문 옹성과 동문지 옹성 해자 안쪽으로, 그 중 동동 51-9번지는 북문으로 진입하는 주요 경로상에 위치하고 있고, 동동 830-7번지는 경상좌도병영성의 주요 식수원이 되었던 산전샘과 서로 통하던 주요경로에 해당되어 보호 가치가 높아, 사적으로 추가 지정하여 보존 관리함이 적절한 것으로 사료됨.

마. 의결사항

○ 원안가결

안건번호 사적 2017-12-002

2. 제주 항파두리 항몽 유적 내외 전주 신설

가. 제안사항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소재 사적 제396호 「제주 항파두리 항몽 유적」 내외에 전주를 정비하고자 행위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제주 항파두리 항몽 유적 인근 주택지 전기 공급을 위하여 전주 신설 및 철거의 문화재 및 역사문화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심의하고자 함

다. 주요내용

(1) 신 청 인 : ○○○

(2) 대상문화재명 : 제주 항파두리 항몽 유적(사적 제396호)

○ 소 재 지 : 제주도 제주시 애월읍 고성리 1126-1번지 일원

(3) 신청내용<**전주 신설 및 철거**>

○ 위치 : 제주도 제주시 애월읍 상귀리 506-4 ~ 유수암리 2151-11
/문화재보호구역, 1구역(최고높이 평지붕 5m, 경사지붕 7.5m)

○ 사업내용

- 철거전주 7기 / 높이 12m 6기, 10m 1기
- 신설전주 14기 / 높이 16m 3기, 14m 6기, 10m 5기

라. 참고사항

(1) 현지조사의견('17.11.17/문화재전문위원 ○○○)

○ 인근 주택 신설로 인하여 전신주 증설은 필요하나 문화재구역에 새로운 굴착을 포함하고 있어 최소한 문화재 보호구역에 대하여는 시굴조사 및 지중화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됨.

마. 의결사항

○ 부결

- 사업타당성 근거 자료 부족(지중화 가능 여부, 신설 전주 위치 검토자료 등)

안건번호 사적 2017-12-003

3. 고성 송학동 고분군 주변 공동주택 신축

가. 제안사항

경상남도 고성군 소재 사적 제119호 「고성 송학동 고분군」 주변에 공동주택 신축을 하고자 행위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고성 송학동 고분군 주변에 공공실버주택을 건립하고자 신청한 사항임

다. 주요내용

(1) 신 청 인 : ○ ○ ○

(2) 대상문화재명 : 고성 송학동 고분군(사적 제119호 / 1963.01.21 지정)

○ 소 재 지 : 경남 고성군 고성읍 송학리 470번지 일원

(3) 신청내용<**공동주택 신축**>

○ 위치 : 경남 고성군 고성읍 교사리 13번지 외 5필지{문화재구역으로부터 489m이격/4구역(고성군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 내용: 공공실버주택 1동

- 대지면적: 4,362㎡
- 건축면적/연면적 : 1,914.20㎡/6,938.96㎡
- 건물높이(층수) : 46.3m(13층)

(4) 신청인 의견

○ 최근 증가하고 있는 65세 저소득층 홀몸노인의 공동체 회복과 사회적 약자인 노인의 안전망 확대를 위한 주거 복지 시스템 도입의 필요성에 따라, 고성군 실버층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주거복지시설 마련을 목적으로 함

라. 참고사항

(1) 현지조사의견('17.11.09/문화재위원 ○ ○ ○, 전문위원 ○ ○ ○)

○ 본 건은 고성 송학동 고분군에서 470여m 이격된 4구역(도시계획 및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인 곳에 공통사항 32m이상 개별심의가 필요하여 건축

면적 1,914.2080㎡, 최고높이 46.30m, 13층 규모의 실버타운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주변에 15층 규모의 건축물이 있고, 측면에서 15층 규모의 아파트가 허가된 바 있어, 기존 경관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사료됨.

마. 의결사항

○ 원안가결

안건번호 사적 2017-12-004

4. 순천 낙안읍성 내 초가정자 설치

가. 제안사항

전라남도 순천시 소재 사적 제302호 「순천 낙안읍성」 내 난전 앞마당에 초가정자를 설치하고자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순천 낙안읍성 내 음식점으로 운영 중인 난전 앞마당에 초가 정자를 3동 설치하고자 허가 신청한 사항임.

다. 주요내용

(1) 신 청 인 : ○ ○ ○

(2) 대상문화재명 : 순천 낙안읍성(사적 제302호 / 1983.06.14. 지정)

○ 소 재 지 : 전남 순천시 낙안면 동·서·남내리 299-1번지 외

(3) 신청내용<**난전 앞 초가정자 설치**>

○ 위치 : 전남 순천시 낙안면 동내리 28번지 일원(문화재구역)

○ 사업내용

- 규모 : 3동, 1층(최고높이 4.05m), 건축면적 각 16.20㎡
- 구조 : 2칸×1칸(5.4m×3m), 민도리식, 초가지붕, 연등천장, 자연석 주초

라. 의결사항

○ 부결

- 문화재구역 내 경관 저해 우려

안건번호 사적 2017-12-005

5. 남한산성 내 북장대 인근 여장 긴급 보수공사

가. 제안사항

경기도 광주시 소재 사적 제57호 「남한산성」 내 여장을 긴급 보수공사를 위하여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남한산성 북장대 인근 여장에 대한 긴급 보수공사를 위하여 신청한 사항임.

다. 주요내용

(1) 신 청 인 : ○○○

(2) 대상문화재명 : 남한산성(사적 제57호 / 1963.01.21. 지정)

○ 소 재 지 : 경기도 광주시 남한산성면 산성리 산1번지 일원

(3) 신청내용**<남한산성 북장대 인근 여장 긴급 보수공사>**

○ 위치 : 경기도 광주시 남한산성면 산성리 산1번지 일원(문화재구역)

○ 사업내용

- 보수내용 : 해체 재축(옥개전, 전돌)
- 전돌 여장 : 5.58㎡(해체, 치장쌓기) 0.04㎡(타구마감 자연석)
- 옥개부 : 0.44㎡[강회몰탈(1:2) 쌓기]
- 기타 : 1.05㎡(생석회 잡석 해체 및 잡석 채우기)

라. 의결사항

○ 원안가결

안건번호 사적 2017-12-006

6. 강화 석릉 등 주변 군부대 훈련장 경계울타리 설치

가. 제안사항

인천광역시 강화군 소재 사적 제369호 「강화 석릉」, 사적 371호 「강화 곤릉」 주변에 군부대 훈련장 경계울타리 설치를 위하여 행위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강화 석릉 등 주변에 군부대 훈련장 경계울타리를 설치하기 위하여 신청한 사항임

다. 주요내용

(1) 신 청 인 : ○○○

(2) 대상문화재명 : 강화 석릉(사적 제369호 / 1992.03.10. 지정),
강화 곤릉(사적 제371호 / 1992.03.10. 지정)

○ 소 재 지 : 인천시 강화군 양도면 길정리 182-8, 산75번지 일원

(3) 신청내용<**군부대 훈련장 경계울타리 설치**>

○ 사업내용

- 경계울타리 등 시설물

라. 의결사항

○ 보류

- 현지조사 후 재검토

안건번호 사적 2017-12-007

7. 강화 곤릉 주변 단독주택 신축 및 진입로 조성

가. 제안사항

인천광역시 강화군 소재 사적 제371호 「강화 곤릉」 주변에 단독주택 신축 및 진입로 조성을 위하여 행위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강화 곤릉 주변에 단독주택(2동) 신축 및 진입로 조성에 대하여 신청한 사항임

다. 주요내용

(1) 신 청 인 : ○○○ 외 1인

(2) 대상문화재명 : 강화 곤릉(사적 제371호 / 1992.03.10. 지정)

○ 소 재 지 : 인천시 강화군 양도면 길정리 산75번지

(3) 신청내용<**단독주택(2동) 신축 및 진입로 조성**>

○ 위치 : 인천시 강화군 양도면 길정리 231-1, 229-6, 229-9번지(문화재구역으로부터 80~150m 이격/1구역)

○ 사업내용

구분	①동	②동	비고
신청면적	부지면적 1,502㎡/진입로 2,581㎡		
건축면적	99.74㎡	76.33㎡	
연 면 적	99.74㎡	85.48㎡	
규 모	1층	1층	경사지붕
구 조	목구조	목구조	
최고높이	6.0m	8.8m	
옹벽설치	L형옹벽 : H=1~3m(115m), H=0~3.6(160m/121m)		

라. 참고사항

(1) 현지조사의견('17.11.15/문화재위원 ○○○, 전문위원 ○○○)

○ 본 건은 강화 곤릉에서 80~150여m 이격된 1구역(개별심의)에 건축 규모 99.74㎡, 85.48㎡와 높이 6~6.7 건축물 2개동을 신축하고자 하는 것으로

○ 지형 변화가 크고, 일부가 문화재에서 인지되어 역사문화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큰 것으로 판단됨

마. 의결사항

○ 부결

- 역사문화환경 저해 우려

안건번호 사적 2017-12-008

8. 강화 곤릉 주변 단독주택 신축 및 진입로와 농지 조성

가. 제안사항

인천광역시 강화군 소재 사적 제371호 「강화 곤릉」 주변에 단독주택 신축 및 진입로와 농지 조성을 위하여 행위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강화 곤릉 주변 단독주택(4동) 신축 및 진입로와 농지 조성에 대하여 신청한 사항임

다. 주요내용

(1) 신 청 인 : ○○○ 외 1인

(2) 대상문화재명 : 강화 곤릉(사적 제371호 / 1992.03.10. 지정)

○ 소 재 지 : 인천시 강화군 양도면 길정리 산75번지

(3) 신청내용<**단독주택(4동) 신축 및 진입로와 농지조성**>

○ 위치 : 인천시 강화군 양도면 길정리 산74, 231-1, 229-6, 229-9번지
(문화재구역으로부터 20m 이격/1구역)

○ 사업내용

구분	A동	B동	C동	D동
신청면적	부지면적 1,600㎡/진입로 3,216㎡/농지 12,135㎡			
건축면적	76.33㎡	76.33㎡	81.92㎡	91.92㎡
연 면 적	85.48㎡	85.48㎡	81.92㎡	81.92㎡
규 모	1층	1층	1층	1층
구 조	목구조	목구조	목구조	목구조
최고높이	8.6m	9.1m	6.0m	6.0m
옹벽설치	L형옹벽 : H=1~3m(115m), H=0~3.3m(203m), H=0~3.6m(170m), H=0~3.6(160m)			

라. 참고사항

(1) 현지조사의견('17.11.15/문화재위원 ○○○, 전문위원 ○○○)

○ 본 건은 강화 곤릉의 지정구역에서 20여m 이격된 1구역(개별심의)에 건축규모 76.33㎡, 76.33㎡, 81.92㎡, 81.92㎡의 6~6.7높이로 4개동을 신축하고자 하는 것으로

○ 해당 문화재의 역사문화환경 지형 변화가 문화재에서 인지되어 역사문화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으로 사료됨

마. 의결사항

○ 부결

- 역사문화환경 저해 우려

안건번호 사적 2017-12-009

9. 익산 토성 주변 사격장 내 시설물 설치

가. 제안사항

전라북도 익산시 소재 사적 제92호 「익산 토성」주변 사격장 시설물 설치를 위하여 행위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익산 토성 주변의 사격장 시설물 설치를 위하여 신청한 사안임

다. 주요내용

(1) 신 청 인 : ○ ○ ○

(2) 대상문화재명 : 익산 토성(사적 92호 / 1963.01.21. 지정)

○ 소 재 지 : 전북 익산시 금마면 서고도리 산52-2번지 일원

(3) 사업내용<**사격장 내 시설물 설치**>

○ 사업내용

- 사격장 시설 사용 재개 후 도비탄 발생 방지 위한 시설물 설치

※ 1992년 사격장 건설, 2015년 사격장 주변 마을 민가에 도비탄 발생 이후 사격장 잠정폐쇄

- 세부내용

· 사격장 후사면 성토(권역 외 지역으로의 피해 방지, 10미터)

· 유탄 방지판 설치(3개소, 50m, 70, 120m / 높이 3~5m / 폭 100m)

· 사격장 굴토(길이 210m / 최고깊이 5m)

(4) 신청인 의견

○ 본 사업은 도비탄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시설물로 현재 사격장 중지로 인하여 타 부대 시설에서 사격훈련 및 평가를 실시 중이어서 사격훈련에 어려움이 많음

○ 사격장을 사격훈련의 목적에 부합하는 거리에서 실행하기 위하여 시설물을 설치하는 것으로, 신청 부대의 소유의 사격장을 활용, 사격훈련을 재개할 수 있도록 긍정적으로 검토 바람

라. 참고사항

(1) 관리단체 의견

○ 본 사업은 익산 토성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 2구역에 해당하는 지역에 위치한 군부대의 사격장 훈련을 재개하는 것임

○ 익산 토성으로부터 350여미터 이격되어 있는 군부대 사격장의 사격훈련을 재개하는 내용으로 사격장에서 발생하는 소음 및 진동 등으로 인해 당해 문화재의 보존관리 및 역사문화경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마. 의결사항

○ 부결

- 역사문화환경 저해 우려

안건번호 사적 2017-12-010

10. 부여 궁남지 주변 임시 스케이트장 시설물 설치

가. 제안사항

충청남도 부여군 소재 사적 제135호 「부여 궁남지」 주변 스케이트장 설치를 위하여 행위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부여 궁남지 주변 스케이트장을 설치하고자 신청한 사항임

다. 주요내용

(1) 신 청 인 : ○ ○ ○

(2) 대상문화재명 : 부여 궁남지(사적 제135호 / 1964.06.10. 지정)

○ 소 재 지 : 충남 부여군 부여읍 동남리 117

(3) 신청내용<**스케이트장 설치**>

○ 위치 : 충남 부여군 부여읍 동남리 172-1번지 일원(현재 궁남지 서문주차장 일원)(문화재구역으로부터 5m 이격/1구역)

○ 사업내용

- 건립 목적

· 유네스코 세계유산 도시 부여의 역사적 가치를 홍보하고 다양한 문화체험 기회 부여

※ 운영기간 : '17.12.22 ~ '18.2.18(59일간)

- 시설물 내용

· 야외스케이트장 1,500㎡(스케이트장 1,200㎡, 썰매장 300㎡), 가설컨테이너(3m×6m) 1동, 몽골텐트 8동(대여소, 문화재 체험코너, 궁남지 사진전시 등)

라. 의결사항

○ 조건부가결

- 시설물 설치는 문화재 경관과 어울리도록 할 것

안건번호 사적 2017-12-011

11. 제주 항파두리 항몽 유적 주변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가. 제안사항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소재 사적 제396호 「제주 항파두리 항몽 유적」 주변에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고자 행위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제주 항파두리 항몽 유적 주변에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고자 신청한 사항임

다. 주요내용

(1) 신 청 인 : ○ ○ ○

(2) 대상문화재명 : 제주 항파두리 항몽 유적(사적 제396호)

○ 소 재 지 : 제주도 제주시 애월읍 고성리 1126-1번지 일원

(3) 신청내용<**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 위치 : 제주도 제주시 애월읍 고성리 505-1{문화재구역으로부터 190m 이격/2구역(최고높이 평지붕 8m, 경사지붕 11m)}

○ 사업내용

- 지적면적 : 4,881㎡
- 개발면적 : 2,171㎡(태양광시설 536㎡, 주변녹지 1,635㎡)
- 태양광 설치 모듈 : 300장

라. 참고사항

(1) 현지조사의견('17.11.17/문화재전문위원 ○ ○ ○)

○ 태양광 발전시설이 문화재와 가까우며, 문화재 쪽으로 향하고 있을 뿐 아니라 규모도 작지 않아 역사문화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으로 판단됨.

마. 의결사항

○ 부결

- 역사문화환경 저해 우려

안건번호 사적 2017-12-012

12. 제주 삼양동 유적 주변 연립주택 신축

가. 제안사항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소재 사적 제416호 「제주 삼양동 유적」 주변에 연립주택을 신축하고자 행위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제주 삼양동 유적 3구역에 5층 주택을 신축하고자 신청한 사항임

- '17년 10차 위원회('17.10.25) 부결 : 역사문화환경 저해우려(높이 과다)

다. 주요내용

(1) 신 청 인 : ○ ○ ○

(2) 대상문화재명 : 제주 삼양동 유적(사적 제416호)

○ 소 재 지 : 제주도 제주시 삼양일동 1660-5

(3) 신청내용**<근린생활시설 및 공동주택(연립주택) 신축>**

○ 위치 : 제주도 제주시 삼양일동 1659-7{문화재구역으로부터 57m 이격 /3구역(평지붕 8m, 경사지붕 11m)}

○ 사업내용

- 지하 1층, 지상 4층(변경없음)
- 철근 콘크리트조, 평지붕

구 분	당초 신청('17.10)	변경 신청('17.11)	비고
건축면적	408.98㎡	408.38㎡	0.6 감소
연면적	1,656.71㎡	1,221.76㎡	434.95㎡ 감소
최고높이	16.6m	12.9m	3.7m 감소

라. 의결사항

○ 부결

- 역사문화환경 저해 우려(높이 과다)

안건번호 사적 2017-12-013

13. 제주 용담동 유적 주변 단독주택 신축

가. 제안사항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소재 사적 제522호 「제주 용담동 유적」 주변에 다가구주택을 신축하기 위하여 행위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제주 용담동 유적 주변에 다가구주택(3층)을 신축하고자 신청한 사항임

다. 주요내용

(1) 신 청 인 : ○ ○ ○

(2) 대상문화재명 : 제주 용담동 유적(사적 제522호 / 2012.05.17. 지정)

○ 소 재 지 : 제주도 제주시 용담이동 2623-1

(3) 신청내용<**다가구주택 신축**>

○ 위치 : 제주도 제주시 용담이동 2704-4(사적 522-1호 지석묘와 4m 정도 도로를 경계로 연접)

○ 사업내용

- 대지면적 : 314.00㎡
- 건축면적 : 186.38㎡
- 연 면 적 : 344.27㎡
- 건축규모 : 지상 3층(건물높이 11.24m)
- 구 조 : 철근콘크리트 구조

라. 참고사항

(1) 현지조사의견('17.10.18/문화재전문위원 ○ ○ ○)

○ 신청지는 용담동 지석묘와 약 4.8m 떨어져 있음. 3층 다가구주택을 신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신청부지 주변은 1~2층 가옥이 주로 분포하고 있어 본 가옥 신축시 문화재 주변의 역사문화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으로 판단됨.

마. 의결사항

○ 부결

- 역사문화환경 저해 우려

안건번호 사적 2017-12-014

14. 경주 원성왕릉 주변 단독주택 신축

가. 제안사항

경상북도 경주시 소재 사적 제26호 「경주 원성왕릉」 주변에 단독주택을 신축하고자 행위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경주 원성왕릉 주변에 단독주택을 신축하고자 신청한 사항임

다. 주요내용

(1) 신 청 인 : ○ ○ ○

(2) 대상문화재명 : 경주 원성왕릉(사적 제26호)

○ 소 재 지 : 경북 경주시 외동읍 괘릉리 산17

(3) 신청내용<**단독주택 신축**>

○ 위치 : 경북 경주시 외동읍 괘릉리 산16-7번지{문화재구역과 연접 /1구역(개별심의)}

○ 사업내용

- 건축면적 : 99.84㎡
- 구조 : 목조구조(한식골기와잇기)
- 층수 및 최고높이 : 1층, 6.24m
- 석축(21.5m) : 높이 1.3m, 길이 4m, 높이 1.3m~2.65m, 길이 17.5m

(4) 신청인 의견

○ 본 대지에 연면적 99.84㎡ 규모의 건축물로서 최고 높이는 6.24m이고 주요구조는 목조구조이며 지붕의 재료는 한식골기와 잇기로 마감하여 주변경관에 조화를 이루고자 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참고사항

(1) 현지조사의견('17.11.17/문화재전문위원 ○ ○ ○)

○ 신청부지는 허용기준 1구역으로 원성왕릉 지정구역에 접해 있으며, 왕릉 북·동쪽 능선 상에 위치함.

○ 지정구역에 접해 있고, 왕릉에서 연결되는 능선 상에 있으며, 주변에 기존의 주택이 없는 지역으로 단독주택 신축시 문화재 경관 보존에 영향이 클 것으로 판단됨.

마. 의결사항

○ 부결

- 역사문화환경 저해 우려

안건번호 사적 2017-12-015

15. 경주 원성왕릉 주변 단독주택 신축(1부지)

가. 제안사항

경상북도 경주시 소재 사적 제26호 「경주 원성왕릉」 주변에 단독주택을 신축하고자 행위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경주 원성왕릉 주변에 단독주택을 신축하고자 신청한 사항임

다. 주요내용

(1) 신 청 인 : ○ ○ ○

(2) 대상문화재명 : 경주 원성왕릉(사적 제26호)

○ 소 재 지 : 경북 경주시 외동읍 괘릉리 산17

(3) 신청내용**<단독주택 신축>**

○ 위치 : 경북 경주시 외동읍 괘릉리 776, 777, 778번지{문화재구역으로부터 226m 이격/1구역(개별심의)}

○ 사업내용

<건축공사>

- 건축면적 / 연면적 : 88.44㎡ / 88.44㎡
- 구조 : 조적구조(벽돌) / 오지기와잇기
- 최고높이 : 1층, 6.05m
- 적벽돌담장 : H=1.2m(L=80m)

<토목공사>

- 최고절토고 : 없음 / 최고성토고 : 4.7m
- 석축 : H=1.3~2.8m(L=54m)
- 측구수로관 : L=30m / PE이중벽관 : L=7m

<진입로개설>

- 최고절토고 : 1.8m / 최고성토고 : 3.47m
- 석축 : H=2.5m(L=15m)
- PE이중벽관 : L=22m

(4) 신청인 의견

○ 경주시 외동읍 괘릉리에 위치한 곳으로 단독주택(1가구)을 건립하여 가족들의 편안한 보금자리를 마련하고 현대식 건물로 주택 양식의 변화와 주거문화 개선에 앞장서서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 하고자 함.

라. 참고사항

(1) 현지조사의견('17.11.17/문화재전문위원 ○○○)

○ 신청부지는 허용기준 1구역으로 문화재 지정구역 경계에서 226m 이격되어 있음.

○ 왕릉에서 조망되지 않는 지대가 낮은 답으로 조성되어 있는 지역임.

○ 단독주택 14동을 신축하는 사업으로 성토높이 최고 4.7m, 석축높이 1.0m~2.8m임.

○ 현재의 "답" 지역을 성토하여 단독주택 14동을 신축하는 신청지는 왕릉에서 조망이 되지 않고 거리도 많이 이격되어 있으며, 인근에 주택들이 들어서 있어 문화재 경관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임.

마. 의결사항

○ 조건부가결

- 시굴조사 필요

안건번호 사적 2017-12-016

16. 경주 원성왕릉 주변 단독주택 신축(2부지)

가. 제안사항

경상북도 경주시 소재 사적 제26호 「경주 원성왕릉」 주변에 단독주택을 신축하고자 행위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경주 원성왕릉 주변에 단독주택을 신축하고자 신청한 사항임

다. 주요내용

(1) 신 청 인 : ○ ○ ○

(2) 대상문화재명 : 경주 원성왕릉(사적 제26호)

○ 소 재 지 : 경북 경주시 외동읍 괘릉리 산17

(3) 신청내용**<단독주택 신축>**

○ 위치 : 경북 경주시 외동읍 괘릉리 772, 778번지{문화재구역으로부터 226m 이격/1구역(개별심의)}

○ 사업내용

<건축공사>

- 건축면적 : 88.44㎡
- 구조 : 조적구조-벽돌구조 / 오지기와잇기
- 최고높이 : 1층, 6.05m
- 적벽돌담장 : H=1.2m(L=82m)

<토목공사>

- 최고절토고 : 없음 / 최고성토고 : 3.4m
- 석축 : H=1.3m(L=29m)
- 측구수로관 : L=26m / PE이중벽관 : L=7m

(4) 신청인 의견

○ 경주시 외동읍 괘릉리에 위치한 곳으로 단독주택(1가구)을 건립하여 가족들의 편안한 보금자리를 마련하고 현대식 건물로 주택 양식의 변화와 주거문화 개선에 앞장서서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 하고자 함.

라. 참고사항

(1) 현지조사의견('17.11.17/문화재전문위원 ○○○)

○ 신청부지는 허용기준 1구역으로 문화재 지정구역 경계에서 226m 이격되어 있음.

○ 왕릉에서 조망되지 않는 지대가 낮은 답으로 조성되어 있는 지역임.

○ 단독주택 14동을 신축하는 사업으로 성토높이 최고 4.7m, 석축높이 1.0m~2.8m임.

○ 현재의 "답" 지역을 성토하여 단독주택 14동을 신축하는 신청지는 왕릉에서 조망이 되지 않고 거리도 많이 이격되어 있으며, 인근에 주택들이 들어서 있어 문화재 경관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임.

마. 의결사항

○ 조건부가결

- 시굴조사 필요

안건번호 사적 2017-12-017

17. 경주 원성왕릉 주변 단독주택 신축(3부지)

가. 제안사항

경상북도 경주시 소재 사적 제26호 「경주 원성왕릉」 주변에 단독주택을 신축하고자 행위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경주 원성왕릉 주변에 단독주택을 신축하고자 신청한 사항임

다. 주요내용

(1) 신 청 인 : ○ ○ ○

(2) 대상문화재명 : 경주 원성왕릉(사적 제26호)

○ 소 재 지 : 경북 경주시 외동읍 괘릉리 산17

(3) 신청내용**<단독주택 신축>**

○ 위치 : 경북 경주시 외동읍 괘릉리 776, 777, 778번지{문화재구역으로부터 226m 이격/1구역(개별심의)}

○ 사업내용

<건축공사>

- 건축면적 : 88.44㎡
- 구조 : 조적구조-벽돌구조 / 오지기와잇기
- 최고높이 : 1층, 6.05m
- 적벽돌담장 : H=1.2m(L=66m)

<토목공사>

- 최고절토고 : 없음 / 최고성토고 : 4.30m
- 석축 : H=1.0~2.0m(L=35m)
- 측구수로관 : L=32m / PE이중벽관 : L=7m

(4) 신청인 의견

○ 경주시 외동읍 괘릉리에 위치한 곳으로 단독주택(1가구)을 건립하여 가족들의 편안한 보금자리를 마련하고 현대식 건물로 주택 양식의 변화와 주거문화 개선에 앞장서서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 하고자 함.

라. 참고사항

(1) 현지조사의견('17.11.17/문화재전문위원 ○○○)

○ 신청부지는 허용기준 1구역으로 문화재 지정구역 경계에서 226m 이격되어 있음.

○ 왕릉에서 조망되지 않는 지대가 낮은 답으로 조성되어 있는 지역임.

○ 단독주택 14동을 신축하는 사업으로 성토높이 최고 4.7m, 석축높이 1.0m~2.8m임.

○ 현재의 "답" 지역을 성토하여 단독주택 14동을 신축하는 신청지는 왕릉에서 조망이 되지 않고 거리도 많이 이격되어 있으며, 인근에 주택들이 들어서 있어 문화재 경관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임.

마. 의결사항

○ 조건부가결

- 시굴조사 필요

안건번호 사적 2017-12-018

18. 경주 원성왕릉 주변 단독주택 신축(4부지)

가. 제안사항

경상북도 경주시 소재 사적 제26호 「경주 원성왕릉」 주변에 단독주택을 신축하고자 행위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경주 원성왕릉 주변에 단독주택을 신축하고자 신청한 사항임

다. 주요내용

(1) 신 청 인 : ○ ○ ○

(2) 대상문화재명 : 경주 원성왕릉(사적 제26호)

○ 소 재 지 : 경북 경주시 외동읍 괘릉리 산17

(3) 신청내용**<단독주택 신축>**

○ 위치 : 경북 경주시 외동읍 괘릉리 772, 778번지{문화재구역으로부터 226m 이격/1구역(개별심의)}

○ 사업내용

<건축공사>

- 건축면적 : 96.11㎡
- 구조 : 일반목구조 / 스페니쉬점토기와
- 최고높이 : 1층, 6.86m
- 적벽돌담장 : H=1.2m(L=96m)

<토목공사>

- 최고절토고 : 없음 / 최고성토고 : 3.9m
- 석축 : H=1.8m(L=33m)
- 측구수로관 : L=30m / PE이중벽관 : L=3m

(4) 신청인 의견

○ 경주시 외동읍 괘릉리에 위치한 곳으로 단독주택(1가구)을 건립하여 가족들의 편안한 보금자리를 마련하고 현대식 건물로 주택 양식의 변화와 주거문화 개선에 앞장서서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 하고자 함.

라. 참고사항

(1) 현지조사의견('17.11.17/문화재전문위원 ○○○)

○ 신청부지는 허용기준 1구역으로 문화재 지정구역 경계에서 226m 이격되어 있음.

○ 왕릉에서 조망되지 않는 지대가 낮은 답으로 조성되어 있는 지역임.

○ 단독주택 14동을 신축하는 사업으로 성토높이 최고 4.7m, 석축높이 1.0m~2.8m임.

○ 현재의 "답" 지역을 성토하여 단독주택 14동을 신축하는 신청지는 왕릉에서 조망이 되지 않고 거리도 많이 이격되어 있으며, 인근에 주택들이 들어서 있어 문화재 경관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임.

마. 의결사항

○ 조건부가결

- 시굴조사 필요

안건번호 사적 2017-12-019

19. 경주 원성왕릉 주변 단독주택 신축(5부지)

가. 제안사항

경상북도 경주시 소재 사적 제26호 「경주 원성왕릉」 주변에 단독주택을 신축하고자 행위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경주 원성왕릉 주변에 단독주택을 신축하고자 신청한 사항임

다. 주요내용

(1) 신 청 인 : ○ ○ ○

(2) 대상문화재명 : 경주 원성왕릉(사적 제26호)

○ 소 재 지 : 경북 경주시 외동읍 괘릉리 산17

(3) 신청내용**<단독주택 신축>**

○ 위치 : 경북 경주시 외동읍 괘릉리 776, 778번지{문화재구역으로부터 226m 이격/1구역(개별심의)}

○ 사업내용

<건축공사>

- 건축면적 : 96.11㎡
- 구조 : 일반목구조 / 스페니쉬점토기와
- 최고높이 : 1층, 6.86m
- 적벽돌담장 : H=1.2m(L=86m)

<토목공사>

- 최고절토고 : 없음 / 최고성토고 : 4.7m
- 석축 : H=1.0~2.3m(L=34m)
- 측구수로관 : L=34m / PE이중벽관 : L=7m

<진입로개설>

- 최고절토고 : 0.1m / 최고성토고 : 2.57m
- PE이중벽관 : L=28m

(4) 신청인 의견

○ 경주시 외동읍 괘릉리에 위치한 곳으로 단독주택(1가구)을 건립하여 가족들의 편안한 보금자리를 마련하고 현대식 건물로 주택 양식의 변화와 주거문화 개선에 앞장서서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 하고자 함.

라. 참고사항

(1) 현지조사의견('17.11.17/문화재전문위원 ○○○)

○ 신청부지는 허용기준 1구역으로 문화재 지정구역 경계에서 226m 이격되어 있음.

○ 왕릉에서 조망되지 않는 지대가 낮은 답으로 조성되어 있는 지역임.

○ 단독주택 14동을 신축하는 사업으로 성토높이 최고 4.7m, 석축높이 1.0m~2.8m임.

○ 현재의 "답" 지역을 성토하여 단독주택 14동을 신축하는 신청지는 왕릉에서 조망이 되지 않고 거리도 많이 이격되어 있으며, 인근에 주택들이 들어서 있어 문화재 경관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임.

마. 의결사항

○ 조건부가결

- 시굴조사 필요

안건번호 사적 2017-12-020

20. 경주 원성왕릉 주변 단독주택 신축(6부지)

가. 제안사항

경상북도 경주시 소재 사적 제26호 「경주 원성왕릉」 주변에 단독주택을 신축하고자 행위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경주 원성왕릉 주변에 단독주택을 신축하고자 신청한 사항임

다. 주요내용

(1) 신 청 인 : ○ ○ ○

(2) 대상문화재명 : 경주 원성왕릉(사적 제26호)

○ 소 재 지 : 경북 경주시 외동읍 괘릉리 산17

(3) 신청내용**<단독주택 신축>**

○ 위치 : 경북 경주시 외동읍 괘릉리 772, 773번지{문화재구역으로부터 226m 이격/1구역(개별심의)}

○ 사업내용

<건축공사>

- 건축면적 : 96.11㎡
- 구조 : 일반목구조 / 스페니쉬점토기와
- 최고높이 : 1층, 6.86m
- 적벽돌담장 : H=1.2m(L=103m)

<토목공사>

- 최고절토고 : 없음 / 최고성토고 : 2.8m
- 석축 : H=1.0~2.8m(L=95m)
- 측구수로관 : L=36m / PE이중벽관 : L=5m

(4) 신청인 의견

○ 경주시 외동읍 괘릉리에 위치한 곳으로 단독주택(1가구)을 건립하여 가족들의 편안한 보금자리를 마련하고 현대식 건물로 주택 양식의 변화와 주거문화 개선에 앞장서서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 하고자 함.

라. 참고사항

(1) 현지조사의견('17.11.17/문화재전문위원 ○○○)

○ 신청부지는 허용기준 1구역으로 문화재 지정구역 경계에서 226m 이격되어 있음.

○ 왕릉에서 조망되지 않는 지대가 낮은 답으로 조성되어 있는 지역임.

○ 단독주택 14동을 신축하는 사업으로 성토높이 최고 4.7m, 석축높이 1.0m~2.8m임.

○ 현재의 "답" 지역을 성토하여 단독주택 14동을 신축하는 신청지는 왕릉에서 조망이 되지 않고 거리도 많이 이격되어 있으며, 인근에 주택들이 들어서 있어 문화재 경관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임.

마. 의결사항

○ 조건부가결

- 시굴조사 필요

안건번호 사적 2017-12-021

21. 경주 원성왕릉 주변 단독주택 신축(7부지)

가. 제안사항

경상북도 경주시 소재 사적 제26호 「경주 원성왕릉」 주변에 단독주택을 신축하고자 행위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경주 원성왕릉 주변에 단독주택을 신축하고자 신청한 사항임

다. 주요내용

(1) 신 청 인 : ○ ○ ○

(2) 대상문화재명 : 경주 원성왕릉(사적 제26호)

○ 소 재 지 : 경북 경주시 외동읍 괘릉리 산17

(3) 신청내용**<단독주택 신축>**

○ 위치 : 경북 경주시 외동읍 괘릉리 772, 774, 778번지{문화재구역으로부터 226m 이격/1구역(개별심의)}

○ 사업내용

<건축공사>

- 건축면적 : 96.11㎡
- 구조 : 일반목구조 / 스페니쉬점토기와
- 최고높이 : 1층, 6.86m
- 적벽돌담장 : H=1.2m(L=90m)

<토목공사>

- 최고절토고 : 0.5m / 최고성토고 : 2m
- 석축 : H=2.3~2.8m(L=36m)
- 측구수로관 : L=16m / PE이중벽관 : L=7m

(4) 신청인 의견

○ 경주시 외동읍 괘릉리에 위치한 곳으로 단독주택(1가구)을 건립하여 가족들의 편안한 보금자리를 마련하고 현대식 건물로 주택 양식의 변화와 주거문화 개선에 앞장서서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 하고자 함.

라. 참고사항

(1) 현지조사의견('17.11.17/문화재전문위원 ○○○)

○ 신청부지는 허용기준 1구역으로 문화재 지정구역 경계에서 226m 이격되어 있음.

○ 왕릉에서 조망되지 않는 지대가 낮은 답으로 조성되어 있는 지역임.

○ 단독주택 14동을 신축하는 사업으로 성토높이 최고 4.7m, 석축높이 1.0m~2.8m임.

○ 현재의 "답" 지역을 성토하여 단독주택 14동을 신축하는 신청지는 왕릉에서 조망이 되지 않고 거리도 많이 이격되어 있으며, 인근에 주택들이 들어서 있어 문화재 경관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임.

마. 의결사항

○ 조건부가결

- 시굴조사 필요

안건번호 사적 2017-12-022

22. 경주 원성왕릉 주변 단독주택 신축(8부지)

가. 제안사항

경상북도 경주시 소재 사적 제26호 「경주 원성왕릉」 주변에 단독주택을 신축하고자 행위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경주 원성왕릉 주변에 단독주택을 신축하고자 신청한 사항임

다. 주요내용

(1) 신 청 인 : ○ ○ ○

(2) 대상문화재명 : 경주 원성왕릉(사적 제26호)

○ 소 재 지 : 경북 경주시 외동읍 괘릉리 산17

(3) 신청내용**<단독주택 신축>**

○ 위치 : 경북 경주시 외동읍 괘릉리 772, 773, 774번지{문화재구역으로부터 226m 이격/1구역(개별심의)}

○ 사업내용

<건축공사>

- 건축면적 : 93.38㎡
- 구조 : 일반목구조 / 아스팔트쉉글잇기
- 최고높이 : 1층, 5.5m
- 적벽돌담장 : H=1.2m(L=87m)

<토목공사>

- 최고절토고 : 2.4m / 최고성토고 : 0.4m
- 석축 : H=2.8m(L=32m)
- 측구수로관 : L=22m / PE이중벽관 : L=7m

(4) 신청인 의견

○ 경주시 외동읍 괘릉리에 위치한 곳으로 단독주택(1가구)을 건립하여 가족들의 편안한 보금자리를 마련하고 현대식 건물로 주택 양식의 변화와 주거문화 개선에 앞장서서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 하고자 함.

라. 참고사항

(1) 현지조사의견('17.11.17/문화재전문위원 ○○○)

○ 신청부지는 허용기준 1구역으로 문화재 지정구역 경계에서 226m 이격되어 있음.

○ 왕릉에서 조망되지 않는 지대가 낮은 답으로 조성되어 있는 지역임.

○ 단독주택 14동을 신축하는 사업으로 성토높이 최고 4.7m, 석축높이 1.0m~2.8m임.

○ 현재의 "답" 지역을 성토하여 단독주택 14동을 신축하는 신청지는 왕릉에서 조망이 되지 않고 거리도 많이 이격되어 있으며, 인근에 주택들이 들어서 있어 문화재 경관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임.

마. 의결사항

○ 조건부가결

- 시굴조사 필요

안건번호 사적 2017-12-023

23. 경주 원성왕릉 주변 단독주택 신축(9부지)

가. 제안사항

경상북도 경주시 소재 사적 제26호 「경주 원성왕릉」 주변에 단독주택을 신축하고자 행위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경주 원성왕릉 주변에 단독주택을 신축하고자 신청한 사항임

다. 주요내용

(1) 신 청 인 : ○ ○ ○

(2) 대상문화재명 : 경주 원성왕릉(사적 제26호)

○ 소 재 지 : 경북 경주시 외동읍 괘릉리 산17

(3) 신청내용**<단독주택 신축>**

○ 위치 : 경북 경주시 외동읍 괘릉리 774, 775번지{문화재구역으로부터 226m 이격/1구역(개별심의)}

○ 사업내용

<건축공사>

- 건축면적 : 93.38㎡
- 구조 : 일반목구조 / 아스팔트쉉글잇기
- 최고높이 : 1층, 5.5m
- 적벽돌담장 : H=1.2m(L=96m)

<토목공사>

- 최고절토고 : 1.8m / 최고성토고 : 2.7m
- 석축 : H=1.0~2.8m(L=31m)
- 측구수로관 : L=48m / PE이중벽관 : L=27m

<진입로개설>

- 최고절토고 : 1.8m / 최고성토고 : 3.47m
- PE이중벽관 : L=40m

(4) 신청인 의견

○ 경주시 외동읍 괘릉리에 위치한 곳으로 단독주택(1가구)을 건립하여 가족들의 편안한 보금자리를 마련하고 현대식 건물로 주택 양식의 변화와 주거문화 개선에 앞장서서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 하고자 함.

라. 참고사항

(1) 현지조사의견('17.11.17/문화재전문위원 ○○○)

○ 신청부지는 허용기준 1구역으로 문화재 지정구역 경계에서 226m 이격되어 있음.

○ 왕릉에서 조망되지 않는 지대가 낮은 답으로 조성되어 있는 지역임.

○ 단독주택 14동을 신축하는 사업으로 성토높이 최고 4.7m, 석축높이 1.0m~2.8m임.

○ 현재의 "답" 지역을 성토하여 단독주택 14동을 신축하는 신청지는 왕릉에서 조망이 되지 않고 거리도 많이 이격되어 있으며, 인근에 주택들이 들어서 있어 문화재 경관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임.

마. 의결사항

○ 조건부가결

- 시굴조사 필요

안건번호 사적 2017-12-024

24. 경주 원성왕릉 주변 단독주택 신축(10부지)

가. 제안사항

경상북도 경주시 소재 사적 제26호 「경주 원성왕릉」 주변에 단독주택을 신축하고자 행위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경주 원성왕릉 주변에 단독주택을 신축하고자 신청한 사항임

다. 주요내용

(1) 신 청 인 : ○ ○ ○

(2) 대상문화재명 : 경주 원성왕릉(사적 제26호)

○ 소 재 지 : 경북 경주시 외동읍 괘릉리 산17

(3) 신청내용**<단독주택 신축>**

○ 위치 : 경북 경주시 외동읍 괘릉리 774, 775번지{문화재구역으로부터 226m 이격/1구역(개별심의)}

○ 사업내용

<건축공사>

- 건축면적 : 93.38㎡
- 구조 : 일반목구조 / 아스팔트쉉글잇기
- 최고높이 : 1층, 5.5m
- 적벽돌담장 : H=1.2m(L=94m)

<토목공사>

- 최고절토고 : 없음 / 최고성토고 : 2.7m
- 석축 : H=2.8m(L=28m)
- 측구수로관 : L=22m / PE이중벽관 : L=3m

(4) 신청인 의견

○ 경주시 외동읍 괘릉리에 위치한 곳으로 단독주택(1가구)을 건립하여 가족들의 편안한 보금자리를 마련하고 현대식 건물로 주택 양식의 변화와 주거문화 개선에 앞장서서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 하고자 함.

라. 참고사항

(1) 현지조사의견('17.11.17/문화재전문위원 ○○○)

○ 신청부지는 허용기준 1구역으로 문화재 지정구역 경계에서 226m 이격되어 있음.

○ 왕릉에서 조망되지 않는 지대가 낮은 답으로 조성되어 있는 지역임.

○ 단독주택 14동을 신축하는 사업으로 성토높이 최고 4.7m, 석축높이 1.0m~2.8m임.

○ 현재의 "답" 지역을 성토하여 단독주택 14동을 신축하는 신청지는 왕릉에서 조망이 되지 않고 거리도 많이 이격되어 있으며, 인근에 주택들이 들어서 있어 문화재 경관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임.

마. 의결사항

○ 조건부가결

- 시굴조사 필요

안건번호 사적 2017-12-025

25. 경주 원성왕릉 주변 단독주택 신축(11부지)

가. 제안사항

경상북도 경주시 소재 사적 제26호 「경주 원성왕릉」 주변에 단독주택을 신축하고자 행위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경주 원성왕릉 주변에 단독주택을 신축하고자 신청한 사항임

다. 주요내용

(1) 신 청 인 : ○ ○ ○

(2) 대상문화재명 : 경주 원성왕릉(사적 제26호)

○ 소 재 지 : 경북 경주시 외동읍 괘릉리 산17

(3) 신청내용**<단독주택 신축>**

○ 위치 : 경북 경주시 외동읍 괘릉리 775번지{문화재구역으로부터 226m 이격/1구역(개별심의)}

○ 사업내용

<건축공사>

- 건축면적 : 93.38㎡
- 구조 : 일반목구조 / 아스팔트쉉글잇기
- 최고높이 : 5.5m
- 적벽돌담장 : H=1.2m(L=93m)

<토목공사>

- 최고절토고 : 없음 / 최고성토고 : 2.8m
- 석축 : H=2.8m(L=26m)
- 측구수로관 : L=20m / PE이중벽관 : L=3m

(4) 신청인 의견

○ 경주시 외동읍 괘릉리에 위치한 곳으로 단독주택(1가구)을 건립하여 가족들의 편안한 보금자리를 마련하고 현대식 건물로 주택 양식의 변화와 주거문화 개선에 앞장서서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 하고자 함.

라. 참고사항

(1) 현지조사의견('17.11.17/문화재전문위원 ○○○)

○ 신청부지는 허용기준 1구역으로 문화재 지정구역 경계에서 226m 이격되어 있음.

○ 왕릉에서 조망되지 않는 지대가 낮은 답으로 조성되어 있는 지역임.

○ 단독주택 14동을 신축하는 사업으로 성토높이 최고 4.7m, 석축높이 1.0m~2.8m임.

○ 현재의 "답" 지역을 성토하여 단독주택 14동을 신축하는 신청지는 왕릉에서 조망이 되지 않고 거리도 많이 이격되어 있으며, 인근에 주택들이 들어서 있어 문화재 경관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임.

마. 의결사항

○ 조건부가결

- 시굴조사 필요

안건번호 사적 2017-12-026

26. 경주 원성왕릉 주변 단독주택 신축(12부지)

가. 제안사항

경상북도 경주시 소재 사적 제26호 「경주 원성왕릉」 주변에 단독주택을 신축하고자 행위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경주 원성왕릉 주변에 단독주택을 신축하고자 신청한 사항임

다. 주요내용

(1) 신 청 인 : ○ ○ ○

(2) 대상문화재명 : 경주 원성왕릉(사적 제26호)

○ 소 재 지 : 경북 경주시 외동읍 괘릉리 산17

(3) 신청내용**<단독주택 신축>**

○ 위치 : 경북 경주시 외동읍 괘릉리 775, 776번지{문화재구역으로부터 226m 이격/1구역(개별심의)}

○ 사업내용

<건축공사>

- 건축면적 / 연면적 : 105.2㎡ / 98.9㎡
- 구조 : 철근콘크리트구조 / 오지기와잇기
- 최고높이 : 1층, 5.3m
- 적벽돌담장 : H=1.2m(L=103m)

<토목공사>

- 최고절토고 : 없음 / 최고성토고 : 3.4m
- 석축 : H=2.8m(L=25m)
- 측구수로관 : L=26m / PE이중벽관 : L=3m

<진입로개설>

- 최고절토고 : 1.8m / 최고성토고 : 3.47m
- PE이중벽관 : L=40m

(4) 신청인 의견

○ 경주시 외동읍 괘릉리에 위치한 곳으로 단독주택(1가구)을 건립하여 가족들의 편안한 보금자리를 마련하고 현대식 건물로 주택 양식의 변화와 주거문화 개선에 앞장서서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 하고자 함.

라. 참고사항

(1) 현지조사의견('17.11.17/문화재전문위원 ○○○)

○ 신청부지는 허용기준 1구역으로 문화재 지정구역 경계에서 226m 이격되어 있음.

○ 왕릉에서 조망되지 않는 지대가 낮은 답으로 조성되어 있는 지역임.

○ 단독주택 14동을 신축하는 사업으로 성토높이 최고 4.7m, 석축높이 1.0m~2.8m임.

○ 현재의 "답" 지역을 성토하여 단독주택 14동을 신축하는 신청지는 왕릉에서 조망이 되지 않고 거리도 많이 이격되어 있으며, 인근에 주택들이 들어서 있어 문화재 경관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임.

마. 의결사항

○ 조건부가결

- 시굴조사 필요

안건번호 사적 2017-12-027

27. 경주 원성왕릉 주변 단독주택 신축(13부지)

가. 제안사항

경상북도 경주시 소재 사적 제26호 「경주 원성왕릉」 주변에 단독주택을 신축하고자 행위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경주 원성왕릉 주변에 단독주택을 신축하고자 신청한 사항임

다. 주요내용

(1) 신 청 인 : ○ ○ ○

(2) 대상문화재명 : 경주 원성왕릉(사적 제26호)

○ 소 재 지 : 경북 경주시 외동읍 괘릉리 산17

(3) 신청내용**<단독주택 신축>**

○ 위치 : 경북 경주시 외동읍 괘릉리 775, 776번지{문화재구역으로부터 226m 이격/1구역(개별심의)}

○ 사업내용

<건축공사>

- 건축면적 / 연면적 : 105.2㎡ / 98.9㎡
- 구조 : 철근콘크리트구조 / 오지기와잇기
- 최고높이 : 1층, 5.3m
- 적벽돌담장 : H=1.2m(L=97m)

<토목공사>

- 최고절토고 : 없음 / 최고성토고 : 2.8m
- 석축 : H=2.8m(L=26m)
- 측구수로관 : L=30m / PE이중벽관 : L=3m

(4) 신청인 의견

○ 경주시 외동읍 괘릉리에 위치한 곳으로 단독주택(1가구)을 건립하여 가족들의 편안한 보금자리를 마련하고 현대식 건물로 주택 양식의 변화와 주거문화 개선에 앞장서서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 하고자 함.

라. 참고사항

(1) 현지조사의견('17.11.17/문화재전문위원 ○○○)

○ 신청부지는 허용기준 1구역으로 문화재 지정구역 경계에서 226m 이격되어 있음.

○ 왕릉에서 조망되지 않는 지대가 낮은 답으로 조성되어 있는 지역임.

○ 단독주택 14동을 신축하는 사업으로 성토높이 최고 4.7m, 석축높이 1.0m~2.8m임.

○ 현재의 "답" 지역을 성토하여 단독주택 14동을 신축하는 신청지는 왕릉에서 조망이 되지 않고 거리도 많이 이격되어 있으며, 인근에 주택들이 들어서 있어 문화재 경관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임.

마. 의결사항

○ 조건부가결

- 시굴조사 필요

안건번호 사적 2017-12-028

28. 경주 원성왕릉 주변 단독주택 신축(14부지)

가. 제안사항

경상북도 경주시 소재 사적 제26호 「경주 원성왕릉」 주변에 단독주택을 신축하고자 행위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경주 원성왕릉 주변에 단독주택을 신축하고자 신청한 사항임

다. 주요내용

(1) 신 청 인 : ○ ○ ○

(2) 대상문화재명 : 경주 원성왕릉(사적 제26호)

○ 소 재 지 : 경북 경주시 외동읍 괘릉리 산17

(3) 신청내용**<단독주택 신축>**

○ 위치 : 경북 경주시 외동읍 괘릉리 776번지{문화재구역으로부터 226m 이격/1구역(개별심의)}

○ 사업내용

<건축공사>

- 건축면적 : 88.44㎡
- 구조 : 조적구조-벽돌구조 / 오지기와잇기
- 최고높이 : 1층, 6.05m
- 적벽돌담장 : H=1.2m(L=78m)

<토목공사>

- 최고절토고 : 없음 / 최고성토고 : 1.8m
- 석축 : H=2.0~2.8m(L=36m)
- 측구수로관 : L=18m / PE이중벽관 : L=3m

(4) 신청인 의견

○ 경주시 외동읍 괘릉리에 위치한 곳으로 단독주택(1가구)을 건립하여 가족들의 편안한 보금자리를 마련하고 현대식 건물로 주택 양식의 변화와 주거문화 개선에 앞장서서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 하고자 함.

라. 참고사항

(1) 현지조사의견('17.11.17/문화재전문위원 ○○○)

○ 신청부지는 허용기준 1구역으로 문화재 지정구역 경계에서 226m 이격되어 있음.

○ 왕릉에서 조망되지 않는 지대가 낮은 답으로 조성되어 있는 지역임.

○ 단독주택 14동을 신축하는 사업으로 성토높이 최고 4.7m, 석축높이 1.0m~2.8m임.

○ 현재의 "답" 지역을 성토하여 단독주택 14동을 신축하는 신청지는 왕릉에서 조망이 되지 않고 거리도 많이 이격되어 있으며, 인근에 주택들이 들어서 있어 문화재 경관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임.

마. 의결사항

○ 조건부가결

- 시굴조사 필요

안건번호 사적 2017-12-029

29. 덕수궁 주변 가설건축물 축조

가. 제안사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소재 사적 제124호 「덕수궁」 주변 가설건축물을 축조하고자 행위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덕수궁 주변에 가설건축물을 축조하고자 신청한 사항임.

다. 주요내용

(1) 신 청 인 : ○ ○ ○

(2) 대상문화재명 : 덕수궁(사적 제124호 / 1963.01.18. 지정)

○ 소 재 지 :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99

(3) 신청내용<**가설건축물 축조**>

○ 위치 : 서울시 중구 태평로 1가 36-4외 17필지{문화재구역으로부터 80m 이격/1구역(개별심의)}

○ 사업내용

구분	사업내용
대지면적	13,207㎡
연면적	1,166.32㎡
건축면적	1,166.32㎡
주구조	경량철골구조
용도	창고, 사무소, 휴게음식점
최고높이	6m
건축규모	지상 1층

라. 의결사항

○ 원안가결

안건번호 사적 2017-12-030

30. 구리 동구릉 주변 근린생활시설 신축

가. 제안사항

경기도 구리시 소재 사적 제193호 「구리 동구릉」 주변 근린생활시설을 신축하고자 행위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구리 동구릉 주변에 근린생활시설을 신축하고자 하는 사항임

다. 주요내용

(1) 신 청 인 : ○ ○ ○

(2) 대상문화재명 : 구리 동구릉(사적 제193호)

○ 소 재 지 : 경기도 구리시 동구릉로 197(인창동)

(3) 신청내용<**근린생활시설 신축**>

○ 위치 : 경기도 구리시 갈매동 산69-167번지{문화재구역으로부터 191m 이격/2구역(평5m, 경사7.5m)}

○ 사업내용

구 분	사업내용	비고
대지면적	491㎡	
연면적	218.7㎡	
건축면적	196.83㎡	
최고높이	11.7m	
구조	지상2층/평지붕/철근콘크리트조/절성토 4m이상	

(4) 신청인 의견

○ 현재 사용하고 있는 건축물이 너무 협소하고 오래된 건축물로서 시설환경이 열악한지라, 좀더 나은 환경을 조성하여, 주위환경 및 본인의 소득증대를 위하여 서류를 제출하오니, 검토 후 처리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라. 참고사항

(1) 현지조사의견('17.11.15/문화재위원 ○○○, 전문위원 ○○○)

○ 동 건은 구리 동구릉 배후산지의 산등성이를 넘어 문화재지정구역 경계에서 191m 이격된 2구역(건물높이 5m, 경사지붕7.5m)에 기존 건물 1층을 철거하고 근린생활시설신축(건축면적 196.83㎡, 건물높이 11.7m)을 계획하고 있음

○ 신청대상지는 동구릉 배경(背景)에 위치하는 시설물로 동구릉 능침에서 바라볼 때 인지되고 있지 않으나, 경사지에서 지형변화를 최소화하고 건물높이를 조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됨.

마. 의결사항

○ 부결

- 역사문화환경 저해 우려

안건번호 사적 2017-12-031

31. 화성 융릉과 건릉 주변 근린생활시설 신축

가. 제안사항

경기도 화성시 소재 사적 제206호 「화성 융릉과 건릉」 주변 근린생활시설을 신축하고자 행위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화성 융릉과 건릉 주변에 근린생활시설을 신축하고자 하는 사항임

- '17년 10차 위원회('17.10.25) 부결 : 높이 과다로 역사문화환경 저해 우려

다. 주요내용

(1) 신 청 인 : ○ ○ ○

(2) 대상문화재명 : 화성 융릉과 건릉(사적 제206호)

○ 소 재 지 : 경기도 화성시 효행로 481번길 21(안녕동)

(3) 신청내용<**근린생활시설 신축**>

○ 위치 : 경기도 화성시 안녕동 187-10번지{문화재구역으로부터 33m 이격/1구역(개별심의)}

○ 사업내용

구 분	1차('17.10.25)/부결	금차	비고
대지면적	270㎡	270㎡	-
연면적	269.98㎡	215.70㎡	감 54.28㎡
건축면적	107.85㎡	107.85㎡	-
최고높이	11.86m	6.3m	감 5.56m
구조	지상 3층 / 경사지붕 / 경량철골조	지상 2층 / 평지붕 / 경량철골조	

라. 참고사항

(1) 현지조사의견('17.11.15)

ㅇ ㅇㅇ대학교 ㅇㅇㅇ

- 해당구역은 화성 융건릉 보호구역으로부터 33m이격된 허용기준 1구역으로 근린생활 시설을 신축하는 행위임
- 동일 신청인은 당초 건물 높이(11.8m, 3층)보다 약5.5m를 줄여 건물높이(6.3m, 2층)로 계획을 변경하여 재신청하였음
- 해당 구역은 융건릉 능역에 포함되는 지역이기는 하나, 신청대지 맞은편에 건물높이 6.3m의 자동차용품점이 허가되어 건축된 사례가 있어 불허할 경우 형평성이 맞지않을 우려가 있음
- 능침에서의 조망권에 해당되지 않는 지역이며, 기존 신청한 건물에 비해 높이가 약5.5m 축소되고, 층수도 감소되어 역사문화환경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않을 것으로 판단됨.

ㅇ 문화재전문위원 ㅇㅇㅇ

- 해당지역은 융·건릉의 진입공간으로 초기신청보다 다소 층고를 줄인(11.8m에서 6.3m)상태로 재신청한 건으로 주변의 건축물들과 비교하여 층고의 조정이 되어 역사문화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다소 미미한 것으로 판단됨.
- 단, 주변경관을 고려한 설계가 요구되며 해당구역은 능역의 진입공간에 해당하는 구역으로 능제복원 구역임을 고려하여 심의가 요구됨.

마. 의결사항

ㅇ 원안가결

안건번호 사적 2017-12-032

32. 오산 독산성과 세마대지 주변 단독주택 신축

가. 제안사항

경기도 오산시 소재 사적 제140호 「오산 독산성과 세마대지」 주변 단독주택 신축을 위하여 행위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오산 독산성과 세마대지 주변 단독주택(한식구조) 6동을 신축하고자 신청한 사항임

- '17년 3차 소위원회('17.04.26) 부결 : 역사문화환경 저해 우려(절토 과다)
- '17년 5차 위원회('17.05.24.) 보류 : 자료보완 후 재검토
- '17년 5차 소위원회('17.07.26) 부결 : 역사문화환경 저해 우려

다. 주요내용

(1) 신 청 인 : ○ ○ ○

(2) 대상문화재명 : 오산 독산성과 세마대지(사적 제140호 / 1964.08.29. 지정)

○ 소 재 지 : 경기도 오산시 지곶동 162-1번지 외

(3) 신청내용<**단독주택(주건축물6동, 부속건물 6동, 지하주차장) 신축**>

○ 위치 : 경기도 오산시 지곶동 임332번지(문화재구역으로부터 386m 이격/1구역)

○ 사업내용

구 분	부결(2017.4.26.) 3차 소위원회	보류(2017.5.24.) 5차 위원회	부결(2017.7.26.) 5차 소위원회	금회 신청 안
신청면적	8,458㎡	8,458㎡	8,458㎡	4,905㎡
지 목	임야	임야	임야	임야
건축면적	1,362.78㎡	1,362.78㎡	1,221.03㎡	783.63㎡
연 면 적	1,362.78㎡	1,362.78㎡	1,221.03㎡	813.63
규 모	1층(주10/부10)	1층(주10/부10)	1층(주10/부10)	1층(주6/부6), 지하주차장
절토높이	2.0~6.6m	0.9~3.6m	0.6~3.6m	**2.0~6.4m**
구 조	한식 목구조	한식 목구조	한식 목구조	한식 목구조
최고높이	6.9m	6.9m	6.9m	6.9m

라. 의결사항

○ 부결

- 역사문화환경 저해 우려

안건번호 사적 2017-12-033

33. 울산 경상좌도병영성 주변 공장 신축

가. 제안사항

울산광역시 중구 소재 사적 제320호 「울산 경상좌도병영성」 주변에 공장을 신축하기 위하여 행위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울산 경상좌도병영성 주변에 공장을 신축하고자 신청한 사항임

- '17년 11차 위원회('17.11.08.) 부결 : 역사문화환경 저해 우려(매스의 분절과 마감재질 조정 필요)

다. 주요내용

(1) 신 청 인 : ○○○

(2) 대상문화재명 : 울산 경상좌도병영성(사적 제320호 / 1987.07.18 지정)

○ 소 재 지 : 울산시 중구 서동 일원

(3) 신청내용<**공장(봉재작업장) 신축**>

○ 위치 : 울산시 중구 동동 526번지, 523번지, 830-31번지, 508-2번지 등 4필지(문화재구역으로부터 약 77m 이격)

○ 건축규모

- 대지면적 : 793.00㎡
- 건축면적 : 425.92㎡
- 연 면 적 : 1,200.51㎡
- 높이/규모 : 10.3m/지상 3층

* 흙깍기(약 200㎡), 되메우기(약 90㎡), 사토(110㎡), 집수정, 우수관 설치, 옹벽설치(약 40m)

라. 참고사항

(1) 현지조사의견('17.11.02/문화재위원 ○○○, 전문위원 ○○○)

○ 본 건은 문화재구역 동측 성내로 77m정도 이격된 장방형 필지에 지상 3층 규모로 공장을 신축하고자 하는 것임

○ 건축높이는 주변 기 개발정도를 감안할 때 무리가 없을 것으로 판단되나, 면적이 넓고 외부 마감재질과 색채가 성벽의 물성과 이질적으로 경관을 저해할 우려가 있음에 따라, 매스의 분절과 마감재질 및 색채를 보다 주변과 조화되도록 높일 수 있도록 조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됨.

마. 의결사항

○ 조건부가결

- 시굴조사 필요

안건번호 사적 2017-12-034

34. 울산 경상좌도병영성 주변 단독주택 신축

가. 제안사항

울산광역시 중구 소재 사적 제320호 「울산 경상좌도병영성」 주변에 단독주택을 신축하기 위하여 행위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울산 경상좌도병영성 주변에 단독주택을 신축하고자 신청한 사항임

다. 주요내용

(1) 신 청 인 : ○○○

(2) 대상문화재명 : 울산 경상좌도병영성(사적 제320호 / 1987.07.18 지정)

○ 소 재 지 : 울산시 중구 서동 일원

(3) 신청내용**<단독주택 신축>**

○ 위치 : 울산시 중구 동동 154-6번지(문화재구역과 연접)

○ 건축규모

- 대지면적 : 477.00㎡
- 건축면적 : 131.58㎡
- 연 면 적 : 131.58㎡
- 높이/규모 : 5.10m/지상 1층
- 지붕형태(재료) : 평슬라브 및 경사지붕(징크판넬마감)

※ 당초 평슬라브였으나 현지조사의견 반영하여 지붕형태 등 일부 수정

라. 참고사항

(1) 현지조사의견('17.11.02/문화재위원 ○○○, 전문위원 ○○○)

○ 본 건은 문화재구역 북서측에 연접하여 지상 1층 규모의 주택을 신축하고자 하는 건으로 주변 기 개발정도를 고려할 때, 신청용도나 규모는 무리가 없을 것으로 판단되나, 문화재 구역에 인접한 필지 특성을 감안하여 지붕형태를 경사지붕으로 하고, 마감은 최대한 저채도의 비 반사재를 사용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됨.

마. 의결사항

○ 조건부가결

- 시굴조사 필요
- 디자인은 전문가 자문 후 시행

안건번호 사적 2017-12-035

35. 춘천 신매리 유적 내 배수로 설치

가. 제안사항

강원도 춘천시 소재 사적 제489호 「춘천 신매리 유적」 내에 배수로 설치를 위하여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춘천 신매리 유적 내에 배수로 정비를 위하여 관로를 설치하고자 신청한 사항임

다. 주요내용

(1) 신 청 인 : ○ ○ ○

(2) 대상문화재명 : 춘천 신매리 유적(사적 제489호 / 2007.11.14. 지정)

○ 소 재 지 : 강원도 춘천시 서면 신매리 302번지 등

(3) 신청내용<**배수로 설치**>

○ 위치 : 강원도 춘천시 서면 신매리 309-5번지 일원

○ 사업규모

- 토공수로 L=62m, 맨홀 1개소
- 흄관(지름 600mm) L=50m 맨홀 2개소
- 수로관(D600～800) L=62, L=88m 맨홀 3개소

(4) 신청인 의견

○ 춘천시 서면 신매1리 309번지 일대는 인근지역에 비해 지대가 낮아 해마다 우기시 상습적으로 침수되고 있어, 농경지는 물론 가옥침수와 교통두절 등의 피해가 되풀이 되고 있어, 근본적으로 문제 해결방법은 하천제방으로 직접적인 배수로를 정비하는 것으로서 금번 사업을 통해 주민들의 편익 제공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함

라. 참고사항

(1) 현지조사의견('17.11.14/문화재위원 ○○○, ○○○)

○ 신매리 유적지 내의 저지대로 배수로 정비의 필요성은 있으나, 현재의 유적지를 관통하는 계획은 유적지를 분리시키는 부정적인 요인이 있으므로 유적지 외곽 또는 유적지에 위해를 주지 않는 다른 방안을 세밀하게 설계하는 것이 바람직함

마. 의결사항

○ 부결

- 지하유구 등 문화재 훼손 우려

안건번호 사적 2017-12-036

36. 영월부 관아 내외 시굴조사 실시

가. 제안사항

강원도 영월군 소재 사적 제534호 「영월부 관아」 내외에서 시굴조사를 실시하고자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영월부 관아 내외에서 영월부 관아의 유적 범위를 확인하고자 시굴조사를 실시하고자 함

- '17년 10차 위원회('17.10.25)에서 영월부 관아 문화재구역 추가지정 검토 결과 '추가자료 보완(시굴조사 등) 후 재검토' 사유로 보류됨.

다. 주요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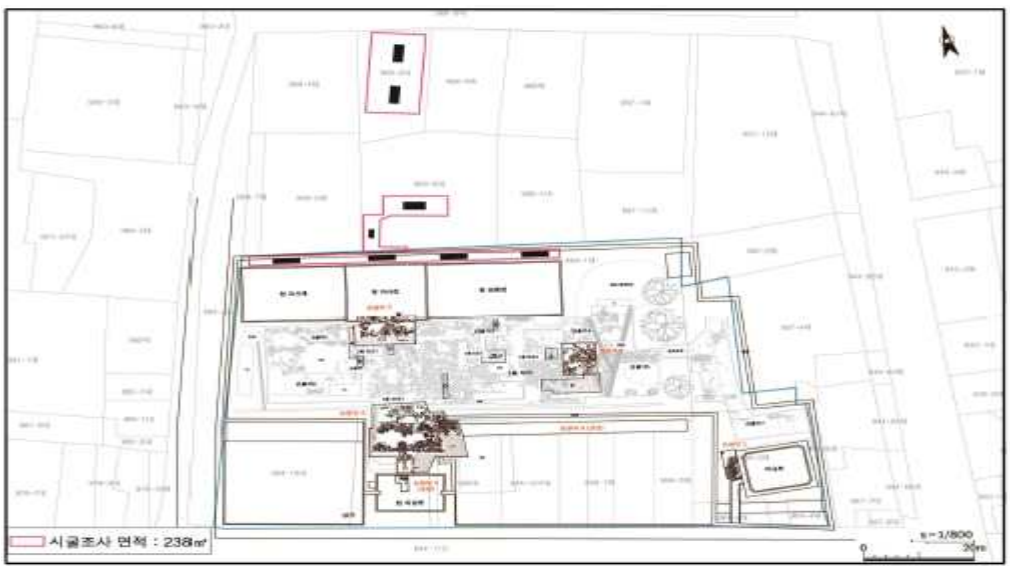
(1) 신 청 인 : ○ ○ ○

(2) 대상문화재명 : 영월부 관아(사적 제534호 / 2016.03.08. 지정)

○ 소 재 지 : 강원도 영월군 영흥리 984-1 일원

(3) 신청내용<**주변지역 학술 시굴조사**>

○ 위치 : 강원도 영월군 영월읍 영흥리 984-1, 988-6, 988-3번지 (문화재구역, 2구역)



○ 시굴면적/기간 : 238㎡/시굴실시 후 3일

○ 신청사유 : 영월부 관아에 대한 시굴조사를 통하여 유적의 범위를 확인하는 한편, 추후 정비 및 복원에 필요한 고고학적 기초자료를 확보하고자 함.

라. 의결사항

○ 조건부가결

- 전문가 자문을 받아 시행할 것

안건번호 사적 2017-12-037

37. 포항 장기읍성 주변 태양광발전소 건립

가. 제안사항

경상북도 포항시 소재 사적 제386호 「포항 장기읍성」 주변에 태양광발전소를 건립하고자 행위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포항 장기읍성 주변에 태양광발전소를 건립하고자 신청한 사항임

다. 주요내용

(1) 신 청 인 : ○ ○ ○

(2) 대상문화재명 : 포항 장기읍성(사적 제386호)

○ 소 재 지 : 포항시 남구 장기면 읍내리 127-2번지 외

(3) 신청내용<**태양광발전소 건립**>

○ 위치 : 경북 포항시 남구 장기면 서촌리 314, 315, 316-1, 317
{문화재구역으로부터 250m 이격/1구역(개별심의)}

○ 사업내용

- 모듈면적 2,970㎡, 모듈수량 1,548장(모듈규격:982×1,954×40㎜(1장당 1.9㎡)
- 전기실(인버터) : 1대(500㎾) 1,380×2,226.5×1,025㎜
- 부지면적 : 8,384㎡
- 높이 : 2.6m

라. 참고사항

(1) 현지조사의견('17.11.15/前 문화재전문위원 ○ ○ ○)

○ 현상변경 대상지는 장기읍성의 북문에서 약 250m 떨어진 곳으로 당해 문화재의 중심경관축인 북루에서 바라보면 사업대상지는 식수로 차폐되어 있어 보이지 않음.

○ 단, 읍성의 높은 지점에서 바라보면 전기실, 판넬설치 등은 가시권에 들어올 것으로 판단됨.

○ 읍성이 지닌 문화재 성격상 최소한 다수의 경관축을 가능한 한 고려해야

하므로 사업내용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됨. 즉 위치 변경 및 차폐방안 강구 등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제안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 따라서 본 현상변경안은 당해 문화재의 역사문화경관에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할 우려가 높은 것으로 판단됨.

마. 의결사항

○ 부결

- 역사문화환경 저해 우려

안건번호 사적 2017-12-038

38. 고령 주산성 등 4개소 주변 건축행위 등 허용기준 조정

가. 제안사항

경상북도 고령군 소재 사적 제61호 「고령 주산성」 주변 건축행위 등 허용기준 조정안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고령 주산성 등 4개 국가지정문화재 주변 건축행위 등 허용기준을 조정하고자 신청함.

다. 주요내용

(1) 신 청 인 : ○ ○ ○

(2) 대상문화재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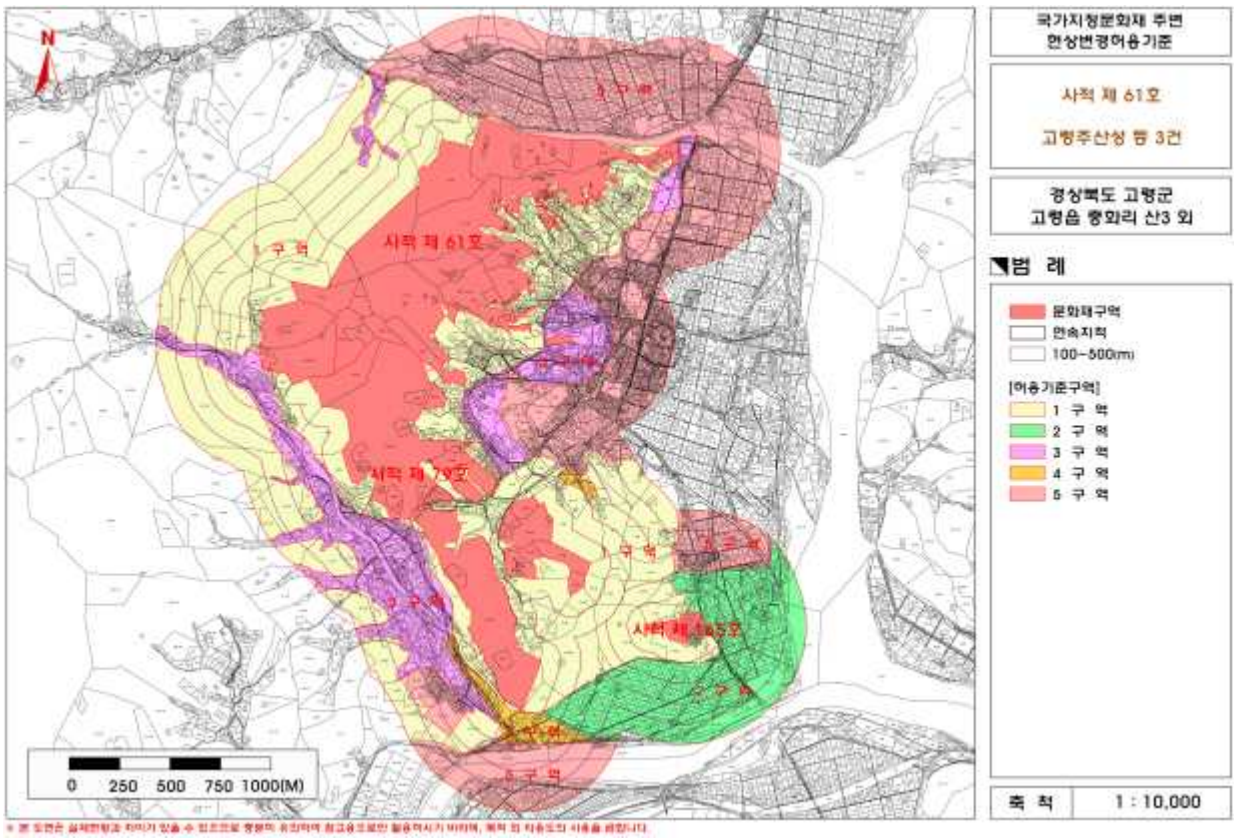
연번	종별	지정번호	문화재명	소 재 지
1	사적	제61호	고령 주산성	경북 고령군 대가야읍 중화리 산3
2	사적	제79호	고령 지산동 고분군	경북 고령군 대가야읍 지산리 산23-1
3	사적	제165호	고령 고아리 벽화 고분	경북 고령군 대가야읍 고아리 산13-1
4	보물	제54호	고령 지산동 당간지주	경북 고령군 대가야읍 지산리 3-5

(3) 신청내용<**건축행위 등 허용기준 조정**>

○ 현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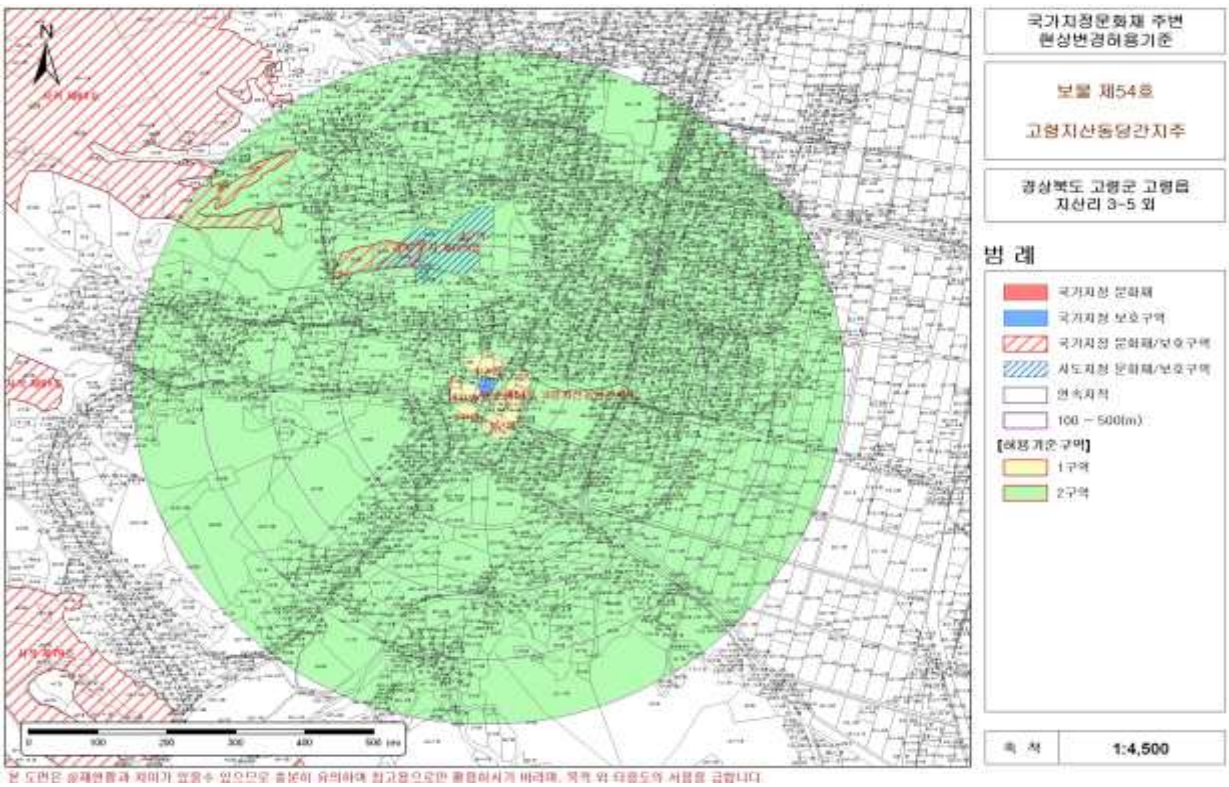
- 사적 제61호 고령 주산성, 제79호 고령 지산동고분군,
  사적 제165호 고령 고아리 벽화고분

구분	허용기준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1구역	○ 보존구역(기존건축물·시설물 규모 범위 내 재·개축 및 보수 허용)		
2구역	○ 건축물 최고높이 8m이하	○ 건축물 최고높이 12m이하	
3구역	○ 건축물 최고높이 11m이하	○ 건축물 최고높이 15m이하	
4구역	○ 건축물 최고높이 23m이하	○ 건축물 최고높이 27m이하	
5구역	○ 고령군 도시계획 등 관련법률에 따라 처리		
공통사항	○ 기존 건축물·시설물 규모·범위 내에서는 재·개축 및 보수 허용 ○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 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한 높이로 함 ○ 평지붕, 원색의 건축재 지양 ○ 유적 정비 및 공익을 위한 신축 및 시설물 설치는 별도 심의 ○ 건축물 및 시설물 설치시 동 허용기준의 적용경계는 건축선을 기준으로 하고 건축 및 시설물의 일부가 설정지역경계에 포함되는 경우 하위지역 기준을 적용한다.(1구역과 2구역에 걸쳐있는 경우 1구역 적용)		



- 보물 제54호 고령 지산동 당간지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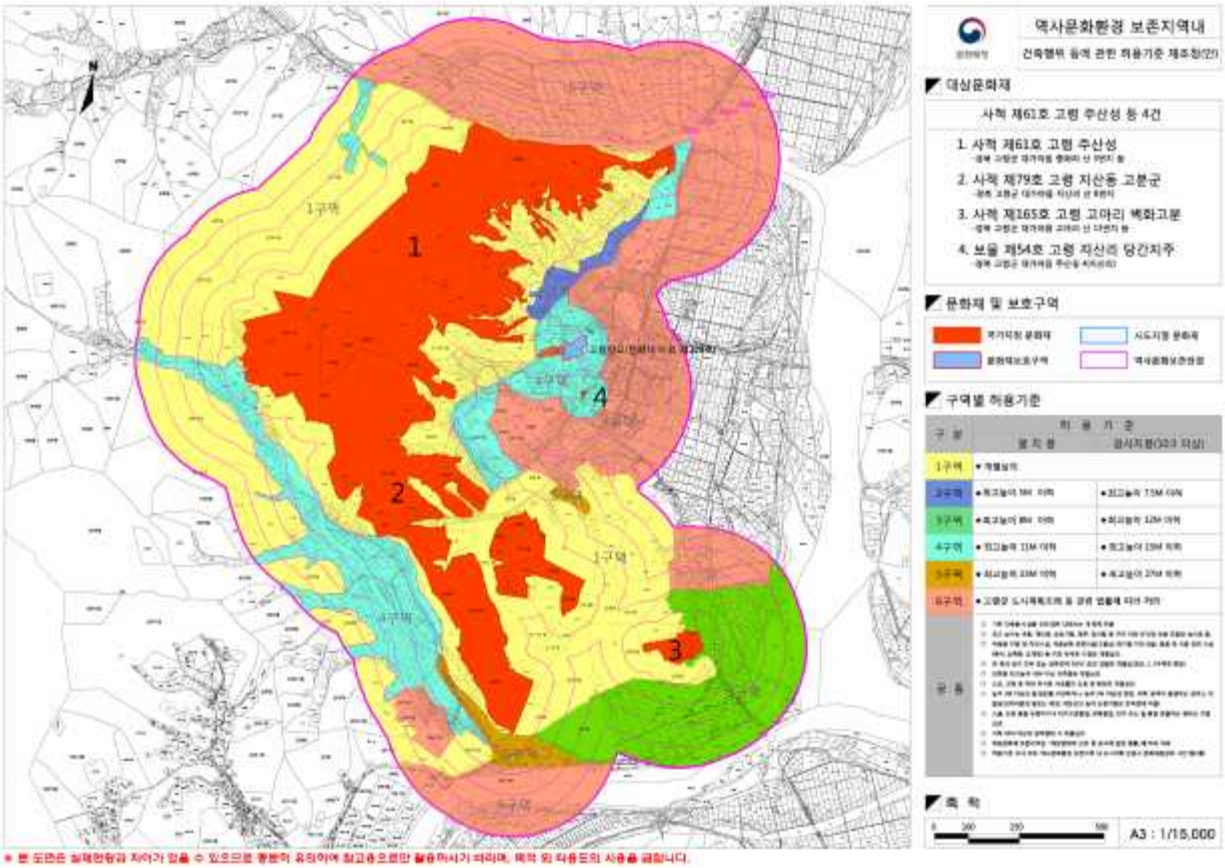
구 분	허 용 기 준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3:10 이상)	
1구역	○ 최고높이 11m(3층) 이하	○ 최고높이 15m(3층) 이하	
2구역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 - 고시일을 기준으로 영향검토구역 내에서 관계법령(도시계획 또는 지방자치단체조례 등 포함)이 변경될 경우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현상변경허용기준을 재조정토록 함.		
공통사항	○ 영향검토구역 내의 기존건축물은 개·보수 가능 ○ 전체 구역에서 층수가 10층 이상 건물은 개별심의. ○ 문화재 보호구역으로부터 200m 이내 지역에서 한 변의 길이 25m, 건축면적 330㎡ 초과 건물은 개별심의(단, 허용기준이 최고높이를 기준으로 평지붕 8m(2층), 경사지붕 12m(2층) 이하인 구역에 한함) ○ 문화재와 조화되는 명도와 채도가 낮은 색상 권장(예 : 지붕 색상 - 회색, 밤색 등). 원색 계열의 색상은 사용제한. 재질은 빛이 반사되지 않는 재료 권장. ○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도축장, 고물상, 폐기물 처리시설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심의. ○ 경사지를 성·절토하거나 평지를 성토하여 높이 3m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심의.(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 ○ 고시된 허용기준의 범위를 초과하여 행하여지는 건설공사는 개별심의 ○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심의		



○ 신청안

- 사적 제61호 고령 주산성, 사적 제79호 고령 지산동고분군,
  사적 제165호 고령 고아리 벽화고분, 보물 제54호 고령 지산동 당간지주

구분	허용기준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1구역	○ 개별심의		
2구역	○ 최고높이 5m이하	○ 최고높이 7.5m이하	
3구역	○ 최고높이 8m이하	○ 최고높이 12m이하	
4구역	○ 최고높이 11m이하	○ 최고높이 15m이하	
5구역	○ 최고높이 23m이하	○ 최고높이 27m이하	
6구역	○ 고령군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공통사항	○ 기존 건축물・시설물 규모・범위 내에서는 개・재축 허용 ○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한 높이로 함 ○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원순환 관련시설(고물상, 폐기물 처리시설),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심의 ○ 한 변의 길이 25m 또는 건축면적 330㎡ 초과 건물은 개별심의(단, 2,3구역에 한함) ○ 건축물 최고높이 32m 이상 건축물은 개별심의 ○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심의 ○ 높이 3m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심의(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 소음, 진동 등을 유발하거나 대기오염물질, 화학물질, 먼지 또는 열 등을 방출하는 행위는 개별심의 ○ 지하 50m 이상의 굴착행위 시 개별심의 ○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은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 ○ 허용기준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문화재청장과 사전 협의함		



라. 참고사항

(1) 현지조사의견('17.10.24/문화재위원 ○○○, 전문위원 ○○○)

○ 해당 문화재는 산림 내 구릉지 주변으로 다수의 문화재가 군집하여 위치하고 있는 면단위 문화유산임. 따라서 문화재의 가치 및 운집형태 등을 고려할 때 주변 지형·지세와 더불어 매장문화재와의 일체적 관계성이 함께 고려되어야 하며, 동측으로 기 형성되어 있는 시가지의 개발정도 및 개발 가능성에 대한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함.

○ 이에 따라, 추가된 고도제한구역(5m) 가운에 남측 테마파크 일대 부지의 경우, 문화재구역의 일체적 관리를 위해 당초 기준(개별심의)의 유지가 바람직함. 또한 북동측에 추가된 고도제한구역(5m)의 경우, 문화재구역 인접 필지를 제외하고, 기개발정도 및 허가처리현황을 토대로 한 고도제한구역으로의 조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됨.(도시계획상 용도지역지구 추가 고려 요망).

○ 추가적으로, 개정된 지침에 의거, 고시문 및 고시도 상의 일부 표현 및 내용 수정·보완이 요구됨.

마. 의결사항

○ 보류

- 당간지주(보물) 허용기준 조정 후 재검토

안건번호 사적 2017-12-039

39. 부산 연산동 고분군 주변 건축행위 등 허용기준 마련

가. 제안사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소재 제539호 「부산 연산동 고분군」 주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을 수립하고자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부산 연산동 고분군 사적 지정에 따른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을 수립하고 신청한 사항임

다. 주요내용

(1) 신 청 인 : ○ ○ ○

(2) 대상문화재명 : 부산 연산동 고분군(사적 제539호 / 2017.06.30 지정)

○ 소 재 지 : 부산시 연제구 연산동 산90-4번지 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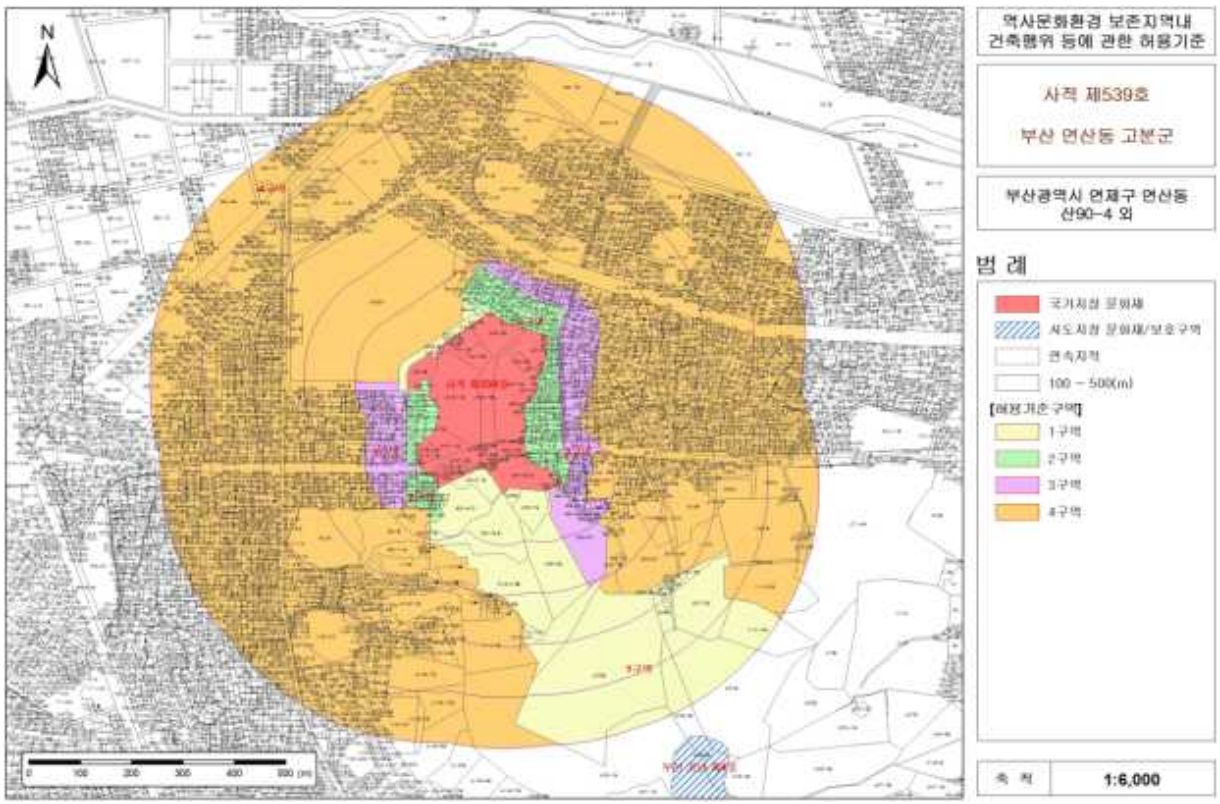
(3) 신청내용

○ 주민의견 청취 의견 : 없음

○ 허용기준(안)

구분	허용기준	
	평지붕	경사지붕 (10:3 이상)
1구역	○ 개별심의	
2구역	○ 최고높이 11m이하	○ 최고높이 15m이하
3구역	○ 최고높이 17m이하	○ 최고높이 21m이하
4구역	○ 부산광역시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공통사항	○ 기존 건축물 및 시설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재축을 허용함. ○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함. ○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원순환 관련 시설,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심의함. ○ 소음·진동 등을 유발하거나 대기오염물질·화학물질·먼지 또는 열 등을 방출하는 행위는 개별심의함 ○ 지하 50m이상의 굴착행위 시 개별심의함. ○ 매장문화재 출토가능지역(1구역~3구역)은 사업시행 전 입회조사를 실시함. (미출토 시 허용기준에 따라 사업을 시행하고, 유구 출토 시 사업 시행 여부를 재검토함) ○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심의함. ○ 허용기준의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문화재 청과사전 협의함.	

○ 허용기준 도면



라. 참고사항

(1) 현지조사의견('17.09.19/문화재위원 ○○○, ○○○, 전문위원 ○○○, ○○○)

○ 해당 문화재는 도심 내 구릉상에 군집형태로 위치하고 있는 삼국시대 고분군으로 역사적, 학술적 가치와 더불어 남측으로 근접하여 위치하고 있는 시지정문화재(배산성지, 기념물 제4호)와의 일체적 관계성이 함께 고려되어야 함

○ 다만, 입지특성 상 남측을 제외한 주변 일대가 기 개발이 진행되어 주거지역을 형성하고 있어 적정 수준(범위포함)의 경관관리를 주된 목적으로 허용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음.

○ 이에 기존 허용기준의 구역설정 및 제한수준을 최대한 유지하되, 남측에 면한 구릉지대의 지형적 연속성 및 관련 문화재와의 일체성을 고려하여 해당 임야 일대를 개별심의구역으로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함.

○ 추가로 남측 배산성지 연결능선에 서측으로 연접한 일부 필지는 향후 고층화될 경우 경관을 저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일정높이의 고도제한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아울러, 개정된 법령 및 지침에 의거, 고시문 상의 표기법을 통일하는 한편, 개별심의 대상 시설(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원순환 관련시설, 동물 및 식물 관련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 도로 및 교량 등)을 선별적으로 병기하며, 기타 여타 문화재와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기준을 추가할 필요가 있음.(소음진동, 환경오염 등 유발시설 개별심의, 50미터이상 굴착 개별심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도시계획 변경 시 문화재청장 사전협의 조항 등)

마. 의결사항

○ 원안가결

안건번호 사적 2017-12-040

40. 경희궁지 주변 건축물 증축

가. 제안사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소재 사적 제271호 「경희궁지」 주변에 건축물을 증축하고자 행위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경희궁지 주변에 건축물을 증축하고자 신청한 사항임

다. 주요내용

(1) 신 청 인 : ○ ○ ○

(2) 대상문화재명 : 경희궁지(사적 제271호)

○ 소 재 지 : 서울시 종로구 신문로2가 2-1

(3) 신청내용<**건축물 증축**>

○ 위치 : 서울시 종로구 신문로2가 1-153{3구역(평지붕 11m 이하, 경사지붕 15m 이하)}

○ 사업내용

구 분	기존 건물	증축 후
대지면적	1,760.6㎡	좌동
건축면적	711.58㎡	891.76㎡
연면적	1,146.57㎡	2,878.12㎡
규모/높이/평지붕	지하1층 지상3층 / 14.15m / 평지붕	지하1층 지상4층 / 16.9m / 평지붕

라. 참고사항

(1) 현지조사의견('17.11.06/문화재위원 ○ ○ ○)

○ 현재 세워져 있는 건물의 측면(경희궁쪽)에 증축하고자 하는 안으로, 기 허가안 진행 시 매장문화재가 발견되어 설계변경이 진행중인 상황임

○ 제출된 안은 지하를 파지 않고 지상에만 증축하는 것으로, 경희궁 쪽에 4층 규모(기존 건물 규모)로 하고자 하며, 또한 엘리베이터 기계실 등 옥상에 돌출되는 입면으로 계획됨

○ 현지조사 결과, 경희궁쪽 증축은 일부 실을 3층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으며, 코어(계단실 등)도 가능한 기존 건물 쪽으로 이동하는 것이 적절하며, 옥탑에 돌출된 기계실 등도 필요한 실이지만 최대한 낮추도록 검토 요망함

마. 의결사항

○ 보류

- 자료보완 후 재검토

【 검토사항 】

안건번호 사적 2017-12-041

1. 원주 강원감영 2단계 복원정비 계획 변경(담장변경) 검토

가. 제안사항

강원도 원주시 소재 사적 제439호 「원주 강원감영」 2단계 복원정비 계획을 변경(담장변경)하고자 하오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2013년도 문화재보수정비 국고보조사업으로 추진 중인 원주 강원감영 2단계 복원정비 사업 계획의 변경(담장 높이 조정) 안에 검토하고자 하는 사항임

- '17년 9차 위원회('17.09.13.) 보류 : 담장 제거, 담장 높이 조정 등에 대한 자료 보완 후 재검토
- '17년 10차 위원회('17.10.25.) 부결 : 후원 담장 제거, 담장 높이 조정(1.2m)에 대한 타당성 자료 부족

다. 주요내용

(1) 신 청 인 : ○○○

(2) 대상문화재 : 원주 강원감영(사적 제439호 / 2002.03.09. 지정)

○ 소 재 지 : 강원도 원주시 원일로 85

(3) 신청내용**<2단계 복원정비 공사 계획 변경>**

○ 위치 : 강원도 원주시 원일로 85(문화재구역)

○ 사업개요

- 영주관 : 면적 41.04㎡, 3칸×3칸, 높이 6.55m, 팔작지붕
- 봉래각 : 면적 19.89㎡, 3칸×3칸, 높이 5.32m, 팔작지붕
- 조오정 : 면적 3.31㎡, 사모정, 높이 3.78㎡, 초가지붕
- 채약오 : 면적 3.80㎡, 육각정, 높이 4m, 초가지붕
- 책 방 : 면적 9.12㎡, 2칸×1칸, 높이 4.13m, 맞배지붕
- 기 타 : 일각문, 한식담장, 연지 등

ㅇ **사업변경 : 후원구역 담장(길이 169m, 높이1.8m) 중 감영 동측 담장 43m를 1.2m 또는 1.5m로 낮추고자하며 외담장과 연결되는 내부담장 21m도 함께 낮추고자함.**

ㅇ **변경사유 : 구 도심 중심부에 소재하고 있는 감영의 접근성과 개방성을 높이기 위함.**

ㅇ 관리계획 : 현재 강원감영은 무인감시 시스템이 설치되어 있으며 경비원을 배치하여 문화재 훼손을 방지하고자 함

라. 참고사항

(1) 현지조사의견('17.09.05)

ㅇ 문화재위원 ㅇㅇㅇ

- 원주 강원 감영의 담장 축조는 개방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 사적(문화재)으로 보존되어야 하지만, 축조물은 원형으로써의 가치보다 상징성, 역사성 등 추상적 의미가 크다.
- 감영으로서의 의미를 살려 담장을 축조해야 한다면, 일부만 건립하여 원형을 상상할 수 있을 정도면 바람직하다고 여겨진다.
- 원형보존보다 문화재 공간과의 소통이 필요한 유적으로 여겨짐

ㅇ 문화재위원 ㅇㅇㅇ, ㅇㅇㅇ, 전문위원 ㅇㅇㅇ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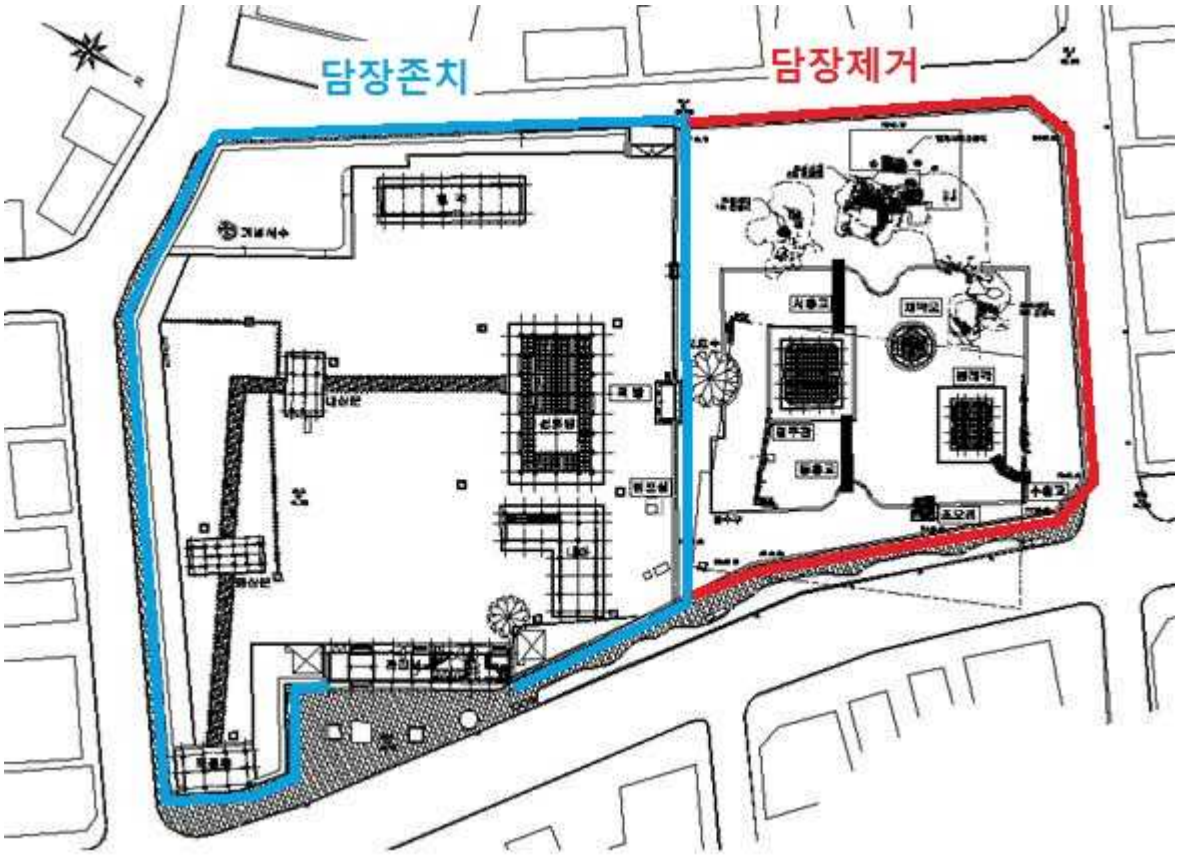
- 본건은 원주 감영 봉래정 연지 복원에 따른 주변 담장 설치를 검토하고 하는 것으로서, 관아 건물의 특성상 정문을 통하여 진출입하여 후원 영역으로 진입하는 동선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 문화재 관리를 위하서는 담장을 설치하여 적절한 인원과 관리계획에 따라 제어될 수 있는 관리를 하는 것이 적절한 것으로 사료됨
- 본 사업은 공원 조성 사업이 아니고 문화재 복원사업으로 복원 취지에 맞추어 건물 및 연지가 조성된 것으로 담장 복원도 되어야 함

마. 참고자료

○ 강원감영 담장 원형(포정루 주변, 일제강점기)



○ 2017. 10월 심의(부결) 안



○ 동측담장 부분 축소안



○ 강원감영 현황 사진



강원감영 전경(남→북)



강원감영 전경(동→서)



강원감영 담장 (가)구간 주변여건(도로폭 20M)



강원감영 담장 (나)구간 주변여건(도로폭 6M, 보행자 도로 없음)



강원감영 담장 (다)구간(도로폭 6M, 모텔, 노래방 등 상가 인접)



강원감영 담장 (다)구간 기존담장(존치)

바. 의결사항

○ 조건부가결

- 선화당구역 담장은 1.8m로, 내부 담장과 후원권역 동측 담장은 1.2m로 함